

여성농어업인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자료집

- | | | |
|-----|---|--|
| ■ 일 | 시 | 1차 : 9월 3일(금) 14시-16시
2차 : 9월 8일(수) 14시-16시
3차 : 9월 10일(금) 14시-16시 |
| ■ 장 | 소 | S타워 22층 벤틙스 중회의실 (종로구 새문안로 82) |
| ■ 주 | 최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 |
| ■ 주 | 관 | (사) 한국농촌사회학회 |

여성농어업인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간담회 의제

-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 향상 방안 (박민선 한국농촌사회학회 연구위원)
- 여성농업인육성지원 표준 조례(안) (김황경산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상임연구원)

권역별 간담회 일정

일 시	장 소	지 역	진행방식	온라인 회의 링크
9월 3일(금) 14:00~16:00	서울 베탱스 중회의실	강원 · 경기	온라인 회의	 zoom회의주소 https://us02web.zoom.us/j/81645441563?pwd=bzhiTFJ3YnZ-tUXZuMFBZejFWVzd0dz09
9월 8일(수) 14:00~16:00	서울 베탱스 중회의실	경북 · 충북 · 충남	온라인 회의	 zoom회의주소 https://us02web.zoom.us/j/85414817621?pwd=YWFNbWtP-WDQyMHJvS0lPaFdhdnRRdz09
9월 10일(금) 14:00~16:00	서울 베탱스 중회의실	전북 · 전남 · 경남	온라인 회의	 zoom회의주소 https://us02web.zoom.us/j/81848551485?pwd=N21nY-WhuM0lidVl2QXZhQVpzWnZPd09

*온라인 회의 참가자는 카메라 및 음향장비를 사전에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문의: 한국농촌사회학회 이현진 간사(010-2015-5291)



주최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

주관 : (사)한국농촌사회학회

축 사



정현찬 위원장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여성농어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찬입니다.

코로나19, 기후위기 등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신 여성농어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어촌에서 여성농어업인은 농업의 주체입니다. 하지만 여성농어업인은 두 배, 세 배의 고단한 삶을 개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위는 낮고 정책 참여를 보장할 제도 장치 역시 미흡한 것이 우리 농어촌의 현실입니다.

농특위는 지난해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을 구성하고 여성농어업인의 권리 향상과 농어촌의 성평등 확산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포럼 운영의 결실로 큰 틀의 추진 방향성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큰 틀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동력을 만들기 위해 올 해 농어촌 여성정책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특별위원회가 고민해서 만든 구체적 방안에 대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낌없이 의견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위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1 순위는 현장을 직접 찾아 그 곳에 계신 분들이 직접 느끼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한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의 첫 걸음을 축하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 김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특히 기획단 위원님들과 행사 주관을 맡은 한국농촌사회학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그리고 지속가능한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성농어민 여러분,

성평등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의 행복으로 가득한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특위는 계속해서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김영란 위원장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

농어촌에서 희망을 만드는 여성농어업인께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논과 밭, 바다와 어장에서 오롯이 4계절의 일들을 감당해내고 계신 여성농어업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농업이나 어업 현장에서 일하시고, 집에서는 가사를 돌보시고, 또 지역사회에서는 마을일을 챙기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농어촌 여성들이 이런 노고에 걸맞는 지위와 대우를 받도록, 그리고 농어촌의 노동 현장과 가정에서 성평등하게 살아가도록 여성농어업인의 단체의 대표와 임원, 회원들께서는 더 분주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고군분투에 거버넌스(정치적 협력)의 짝이 되기 위해서 농어촌농어업특별위원회('농특위')에서는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농특위는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농어촌의 여성이 처한 현실과 해결책을 찾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포럼의 성과를 '농어촌 여성정책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연결해서 올해의 첫 활동으로 '지역순회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여성 단체와 현장 협력기관, 연구기관과 대학 등을 대표해서 농어촌 여성이 처한 현실을 깊이 고민하고 해결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여성농어민이 겪는 다양한 문제의 뿌리는 확고하지 못한 여성농어업인의 법적 지위**라는 작년 포럼의 결과에 동의하고 이 문제를 법과 제도 차원에서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98년 농업부문의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역할 재정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농림부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한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2001년 <여성농업인육성법>이 제정되고, 5차에 걸친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과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권익이 신장되며 복지도 증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는 **성평등한 법적 지위 확보와 그것을 발현할 정부 조직의 체계 구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자리를 잡는다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생산·교육·복지·의료 등의 정책들이 지금보다 풍부한 내용과 추진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어떤 사안보다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공동경영주 관련 의제, 그리고 현실을 반영하고 실제로 활용되는 <여성농업인육성조례> 개정에 주력할 것입니다. 특히 <여성농업인육성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자체마다 여성농업인 정책부서를 세워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역의 정책이 교감, 교류, 협력해서 논, 밭, 하우스, 바다, 어장, 그 어디에 일하시든지 여성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더불어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여기에 힘을 보태서 논의의 처음을 열어주신 한국농촌사회학회의 박민선 교수님과 김황경산 상임연구원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지역순례간담회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귀한 의견을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과 바쁜 일정에도 기획에 참여해 주신 특별위원회 기획단 위원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자체의 담당자께서는 여러 우려를 가지고 간담회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여성농어업인의 보다 나은 미래를, 그리고 청년 여성농업인들에게 구시대의 습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농어촌 구석구석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성농업인들께서도 농어촌의 희망은 여성이고, 그 희망을 만드는 것도 바로 여성 자신들이며, 이런 여성들 주변에 다양한 응원군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현장에 의해서 정책이 바뀌는 멋진 일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대가 가능하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여성농어업인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응원해 주시는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목 차

의제발표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 향상 방안	13
(박민선 한국농촌사회학회 연구위원)	
여성농업인육성지원 표준 조례(안)	35
(김황경산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상임연구원)	

지정토론

◆ 1차 토론회(강원·경기권역)

안정미(농가주부모임철원군 연합회 회장)	55
한영미(횡성여성농업인센터 센터장)	59
안태운(경기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63
유명환(강원도 농정국 농정과장)	65

◆ 2차 토론회(경북·충북·충남권역)

이소희(전 청년여성농업인연합회 회장)	71
이진희(생활개선회 경북연합 회장)	73
김대식(경북도청 농업정책과 과장)	77
남영숙(경북도의원)	87

◆ 3차 토론회(전북·전남·경남권역)

김명순(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97
오순이(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정책위원장)	99
이현서(전라북도청 농업정책과 과장)	103
옥은숙(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111

의제 발표

-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 향상 방안 박민선
- 여성농업인육성지원 표준 조례(안) 김황경산

여성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인정 방안

: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박민선(한국농촌사회학회 연구위원)

- 목 차 -

제1장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

1. 여성농업인의 참여 현황
2.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

제2장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영 현황과 여성농업인 문제

1.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여성농업인의 지위
2. 농업경영체 등록제 개요
3.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4. 공동경영주 등록제 운영 현황

제3장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특징과 한계

1.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와의 관계
2.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한계

제4장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방안

1. 농업경영체의 개념 정립
2.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추진
3.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법 개정과 연계된 제도 개선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장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

1. 여성농업인의 참여 현황

- 여성농업인은 농가 인구의 절반 이상을 구성하며(<표-1> 참조), 농업 노동과 농외소득 활동에 참여하면서 농가의 주요 생산인력으로 참여하고 있음
- 2018년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가 일 기여도가 절반을 넘는다고 응답한 여성농민이 52.5%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사일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음. 여성농업인은 절반 이상의 농업노동을 담당할 뿐 아니라 농외소득활동에 20% 이상이 참여하고,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이 평균 4.72시간으로 남성의 0.61시간에 비해 월등하게 높음(「여성농업인 실태조사」, 2018)
- 또한 농가인구의 성별 농업노동시간은 2017년도 기준 남성이 연평균 469.2시간이고, 여성이 411.9시간으로 조사되었음(「농가경제조사」, 2017)

<표-1> 성별농가인구

(단위: 천명, %)

연도	농가인구	남성	구성비	여성	구성비
2000년	4,032	1,972	48.9%	2,060	51.1%
2010년	3,063	1,501	49.0%	1,562	51.0%
2015년	2,569	1,264	49.2%	1,305	50.8%
2019년	2,245	1,100	49.0%	1,145	51.0%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2.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

-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소외
- 여성농업인은 농가 경제의 상당 부분에 기여하고 있으나, 「여성농업인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한 여성농업인은 37.3%에 지나지 않고, 집이나 건물을 소유한 여성농업인 비율 역시 36.37%에 불과함
- 또한 여성농민의 직업적 지위에 대한 질문에서 여성농민 스스로 남성농민보

- 다 낮은 지위에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81.1%로 조사되었으며, (공동)경영주로 인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8.4%(61.6%가 가족종사자로 인식)로 나타남
-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업에 주 종사하는 여성은 2019년도 기준, 전체 1,435천명 중 763천명으로 52.8%에 이르나 여성경영주는 1,007천명 중 187천명으로 18.6%에 불과함(<표-2>참조)

<표-2> 농업 주종사자 및 경영주

(단위: 천명, %)

구분		2010년			2015년			2019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농가 인구	전체	3,063	1,562	51.0	2,569	1,305	50.8	2,245	1,145	51.0
	15세 이상	2,793	1,433	51.3	2,420	1,233	51.0	2,147	1,097	51.1
농업 주종사		1,846	968	52.4	1,664	864	51.9	1,453	763	52.5
경영주*		1,177	218	18.5	1,088	194	17.8	1,007	187	18.6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배제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농민수당은 농가단위로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여성농업인이 소외됨
- 경영체 등록 제도에 등록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보조금 등 농업정책 사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농협조합원으로 가입도 불가함

□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미비

- 가족과 함께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시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경영주’라는 지위는 관련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의 새로운 단계 모색 요구

- 1단계 : 농촌 혹은 농가 주부, 경영주 부인으로서 인정되던 단계(invisible farmer: Sachs,1983)에서 직업인으로서 여성농업인(visible farmer)으로 인정
- 2단계 : 무급가족종사자에서 가족원과 함께 공동으로 경영을 책임지는 공동경영인 지위 인정
- 3단계 : 실효성 있는 법적 지위로서의 공동경영인으로서의 지위 인정

제2장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영 현황과 여성농업인 문제

1.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여성농업인의 지위

- 농업인의 정의는 농업진흥기본법(이하 ‘기본법’)에 의해 정의됨
 -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의 정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법에 의해 농업인의 종사상의 지위가 규정되는 것은 아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체법’)에도 농업인의 종사상의 지위를 직접 규정하는 조항은 없음
- 경영체법에 의해 경영체 등록을 시행한 것을 계기로 ‘경영주’라는 공식적 지위가 생성되고 그 외 가족원은 가족종사자라는 지위를 부여받는 결과를 초래함
 - 관습적으로 세대주를 경영주로 인식하였던 관행이 경영체 등록을 통해 (명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남성이 농업경영주로, 세대원인 여성이 가족종사자로 등록되는 역기능을 초래함
- 여성농어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방안으로 ‘공동경영주’로서의 지위 인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경영체 등록 시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가능해졌음. 즉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로서 공동경영주가 인정되는 계기를 마련함
 - 그러나 경영체법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여성농업인육성법 모두 공동경영인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인정하는 법적 조항은 없음
- 직불제 농정하의 각 종 직불제, 농민수당과 같은 소득지원정책 등이 ‘농업인 개인’ 단위가 아닌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것과 관련, 공동경영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권한에 대한 새로운 단계의 논의가 시작됨
 - 후계자 및 일부 여성농업인의 경우 독립경영주로 등록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남. 이는 경영체 등록의 신뢰성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경영체의 독립

성과 단일성이란 관점에서도 경영체의 발전에는 역기능을 초래함¹⁾

2. 농업경영체 등록제 개요

□ 농업경영체 등록제란

- 경영체법(2009. 4.1. 제정) 에 근거하여 2009년 10월 도입
-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 농가 규모별 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과 정책자금의 중복 및 부당지급 최소화를 통해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한 제도²⁾로 시행되고 있음

※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어업경영체(어업인 및 어업법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어선, 양식시설 등 생산 수단, 생산방법 및 생산규모 등 어업경영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융자, 보조금 등 각종 수산사업의 지원 자격 부여 및 수산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제도.”³⁾로 안내되고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제 취지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정책자금 대상을 선정하는 기본 데이터로 작용하며 농산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 보조금 등의 정책사업 집행 시 근거로 활용됨
- 농어업 행정의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농어업인을 등록하는 제도로써 농어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함으로써 농어업관련 정책 사업 대상이 됨
- 농업경영체는 농지원부와 함께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직불제 신청 자격 등 농업인 대상 정책 집행 시 대상을 특정하는 자료로 활용됨)

□ 농어업경영체 등록 대상

-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며,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정의되고 있음

1) 최근 농가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체의 등록은 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2019년 동일 주소에서 14.5만개의 복수 경영체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는 부분적으로는 후계자의 경영독립을 촉진하는 긍정적 기능을 초래할 수 있으나 경영체의 경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란 측면에서 경영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음.

2) 농업경영체온라인등록시스템. <https://uni.agrix.go.kr/docs2/potal/menu01.html>

3)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시스템. <https://www.fips.go.kr/p/S04010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3.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수는 2019년 기준 2,447천명이며, 등록된 인원 중 여성은 1,120천명으로 45.8%를 차지함
- 「농림어업조사」 상 성별농가인구는 2,245천명이며 이 중 여성이 1,145천명으로 51%를 차지하는 데 비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의 비중은 45.8%로 낮음

<표-3> 연도별 성별 농업 경영체 등록 현황

(단위: 천명, %)

연도	전체	남성		여성	
		수	비율	수	비율
2015년	2,583	1,359	52.6%	1,224	47.4%
2016년	2,546	1,351	53.1%	1,195	46.9%
2017년	2,466	1,326	53.8%	1,140	46.2%
2018년	2,443	1,320	54.0%	1,123	46.0%
2019년	2,447	1,327	54.2%	1,120	45.8%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www. naqs.go.kr)

4. 공동경영주 등록제 운영 현황

□ 공동경영주 등록제 연혁

- 2016년, 농업경영체 등록제에서 여성농업인을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도록 개정함

- 2018년, 공동경영주 등록 시 배우자 동의 절차를 삭제하도록 지침을 개정함

□ 공동경영주 등록제 취지

- 여성농업인의 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공동경영주 개념을 도입

□ 공동경영주 등록 조건

- 경영주 외의 농업인이 경영주의 배우자인 경우 신청·변경 서식의 공동경영주란에 표시해 등록함으로써 공동경영주가 됨
-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음

□ 경영주 중 여성의 비율은 27.6%로 낮고, 공동경영주 등록 비율 또한 저조함

-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의 비율은 '15년 24.9%에서 '19년 27.6%로 조금씩 높아짐(표-4>참조)
-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여성농업인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 9월 기준, 등록대상인 582천명의 6.92% 수준에 불과함(<표-5>참조)
-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공동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 : 25.4%

<표-4> 연도별 공동경영주 등록 현황

(단위 : 천명, %)

연도	경영주			공동 경영주			경영주 외		
		여성	비율		여성	비율		여성	비율
2015년	1,590	396	24.9%	0	0		992	882	88.9%
2016년	1,618	416	25.7%	13	12	92.3%	914	767	83.9%
2017년	1,645	435	26.4%	23	20	87.0%	798	685	85.8%
2018년	1,659	448	27.0%	27	24	88.9%	758	650	85.8%
2019년	1,686	466	27.6%	36	32	88.9%	725	622	85.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 「여성농업인 정책 자료집 모아모아 한눈에」. p. 83.

<표-5> 공동경영주 등록대상 등록 현황

(단위 : 명, %)

	2018년			2019년			2020년 9월		
	대상	등록	등록비	대상	등록	등록비	대상	등록	등록비
남성	57,810	2,875	4.97%	57,111	4,254	7.45%	59,447	5,592	9.41%
여성	608,596	23,949	3.94%	587,169	31,671	5.39%	582,296	40,295	6.92%
계	666,406	26,824	4.03%	644,280	35,925	5.58%	641,743	45,887	7.15%

* 등록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외 농업인 중 배우자 현황임

자료: <https://www.o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32&bbsNo=36&nttNo=120767>

제3장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특징과 한계

1.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와의 관계

□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는 법적 지위와는 다른 개념

- ‘경영주’, ‘공동경영주’에 대해 법규상 그 의미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것이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공공경영주의 지위는 법령에 명시된 것은 아니며,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 농업경영체(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농업인용)’에 공동경영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 우리나라의 농업관련 법령은 생산 및 유통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에 집중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농업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음. 관련법에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지위 보장과 권익 향상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함

□ 농업경영체 등록제 대상의 모호성과 배타성

- 농업경영체법에서 사업체로서 경영체와 자연인으로서의 농업인의 구분이 없음
- 300평 이하 소규모 청년농, 고령농, 외국인 노동자, 계절적 농업노동자 등 농사일에 종사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농민, 임차농은 등록이 불가함

-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겸업하는 여성농업인들(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은 공동경영주 등록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음. 반면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경영주는 겸업이라도 등록이 가능함

※ 2018년 기준, 농가소득 중 겸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달하고 겸업농가가 43.2%에 이룸. 농업구조 상 농업소득만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실정임

2.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한계

□ 남성을 기본으로 하는 경영체 등록 제도의 성 차별성

- 농업경영체는 주로 농가를 기본단위로 설계되고 집행되어 왔던 기존 정책 접근방식을 반영한 것임
- ‘경영체=농가=농업인’으로 보는 시각, 즉 남성을 농가의 대표로 보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 이에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드러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⁴⁾
-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는 농가를 기반으로 하고, 경영주를 특정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영체=농가=남성농업인’, ‘여성농업인=가족 종사자’라는 인식을 유지시키는 효과를 발휘함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남성 가구주를 중심으로 하는 농가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있음.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가(家)를 기준으로 정리하던 2007년 12월 31일 이전의 민법의 가(家) 제도 또는 호적 제도가 폐기되고, 2008년 이후 개인의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어 가(家)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작성되고 있음.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는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영체 단위로 작성하되 농업인 개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후계세대를 배제하는 경영체 등록 제도의 한계

-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인은 경영인의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음. 이는 공동경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가운데 공동경영인을 세대주와의 관계로 환원한 편의적 발상

4) 농업경영체는 생계를 함께하는 가구라는 의미의 농가(farm household)와는 다른 개념임. 농가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가족원이 존재하며 이들의 소득을 결합하는 단위(income pooling unit)로서 (Friedman, 1984) '가족원의 재생산을 꾀하는 단위'인 반면, 농업경영체는 농가가 가진 (자산의 일부인) 농업경영자원을 투자하여 소득을 창출하여 '농업경영의 지속하는 꾀하는 경영의 단위'를 말한다. 특히 점차 토지, 노동, 자본 각각의 기회비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농가와 농업경영체의 괴리는 커질 수밖에 없음

- 농업경영에 적극 참여하는 후계자 및 후계자의 배우자가 가족종사자로 등록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초래하고⁵⁾ 후계세대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경영체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그 결과 농업경영체의 분리를 통해 경영의 영세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명목상의 경영분리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경영인의 개념을 명확히 할 뿐 아니라 공동경영인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시하고 정책지원 대상 선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제4장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방안

1. 농업경영체의 개념 정립

- 경영체를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규정하는 현행 조항 개정 필요
 - 농업인과 경영체를 동일시하는 개념적 혼란 제거가 필요
- 경영체법의 등록대상은 ‘농업인이 포함된 경영체’가 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는 ‘농업인이 포함된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임
 - 세대별 등록 시 경영체에는 기본법 상의 농업인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함
 - 공동경영주를 경영주의 배우자로 한정된 조항은 삭제

2.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추진

- 여성 농업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의 소재 문제
 - 여성농업인의 법률적 지위와 관련된 법률 개정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규정하는 조항이 「농업농촌 기본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경영체법 등 어떤 법률에서 다루어져야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2020)⁶⁾

5) 후계 여성농업인의 경우 가족종사자로 등록되어 대외적 신용도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하여 직불카드만 사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하고 있음

2020년 농특위 여성정책 포럼 토의 내용

- (제1안) 농업농촌기본법에 농업인 규정만 있음.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 등 스스로 지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견해
- (제2안) 기본법에서 이미 존재하는 농업인 규정과 별도의 여성농업인 정의는 불필요하며 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규정이 가진 문제를 고려하고 그 안에서 여성농업인의 문제가 함께 거론되어야 한다는 견해

- 여성농업인의 ‘농업인’으로서의 직업적 지위에 대한 법적근거와 ‘공동경영인’ 등 종사상의 지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구별하여야 함⁷⁾
-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문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종사상의 지위, 즉 공동경영주 등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조항이 어떤 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는가가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임

□ 여성 농업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의 소재 문제

- 정은미 외는 ① 현행 기본법, 경영체법 등의 법령이 부부 공동경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부부가 농지를 합유 또는 공유하여 공동경영을 하는 경우 ‘지분적 조합관계’로서 부부가 모두 ‘농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정은미 외, 2020: 56-57)
- 또한 기본법에서 제24조에 농업종사자의 지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시함
- 관련법의 입법 목적에 따르면 농업인의 종사상 지위는 기본법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⁸⁾

7) 기본법 외에 여성농업인의 농업인으로서의 지위를 별도로 정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되었음. 필자는 여성농업인을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기본법의 정의와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로서 공동경영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파악하고 있음을 밝혀둠.

8) 기본법 개정 방안 외에도 여성농업인 육성법개정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를 인정받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프랑스의 경우 농업기본법에서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농업인 권리향상 방안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육성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여성 농업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 여성농업인의 종사상의 지위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유급/무급), 그리고 피고용 농업노동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구분하고, 경영체 등록 시에 이를 반영하여 등록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공동경영주란 경영주와 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며 경영주는 대외적으로 공동경영주의 위임에 의해 경영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공동경영주는 경영과정에 참여하고 경영의 성과를 공유하며 경영의 수익에 대한 잔여청구권을 가진 존재로서 경영을 통해 얻은 수익과 자산을 공유하는 존재로 인정받아야 함. 이는 여성농업인의 소득 인정은 물론 민법상의 재산권 형성 권리 등으로 이어져야 할 것임
- 공동경영주는 세대 내에서 성별과 세대주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경영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포함되어야 함

<표-7> (여성)농업인 종사상 지위 관련 법률안 개정 방안

	기본법 개정	경영체법 개정
변경 범주	• 기본법 제24조제3항 신설	• 경영체법 제3조, 제4조 개정 • 시행 규칙 변경에 따른 서식 변경
변경 내용	• 농업인의 종사상의 지위 규정 삽입하여 경영체 등록에 반영하도록 함 • 경영주,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임금노동자로 종사상 지위 부여	• 농업인과 경영체의 개념 혼란 제거 • 공동경영주 시행규칙 변경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의 배우자 조항 삭제, 복수의 경영주 인정)

<표-6> (여성)농업인 종사상 지위 법률안 소재별 장단점

	기본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장 점	• 경영체 등록에 모든 농업인의 종사상 지위가 일관된 기준에 의해 등록됨	•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 • 여성농업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신속하게 법률 개정 가능
단 점	• 농업인 규정과 관련된 입법 과정의 지난함 • 여성농업인의 독자성과 주도성을 상실할 우려	• (남성) 후계자 문제 미해결 • 기본법 개정 시의 반영 문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정의)----- -----.	단, 제3조제1호와 관련, 경영체법 제2조제3호를 개정할 필요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 ----- ----- -----.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 ----- ----- -----.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육성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4.~11. (생략)	4.~11. (현행과 같음)	경영체법 제4조(농어업경영체경영정보의 등록) - 농지 등 생산수단, 생산물, 생산방법, 가족사육두수 등의 경영정보를 등록하게 되어 있어 경영체구성원 정보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시행령에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등록대상 정보는 농업인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영농이력), 동거세대원 임 - 농업인과 경영체를 동일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家族農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③ <u>가족농가의 농업종사자는 경영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영주,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임금노동자의 종사상 지위를 가지며, 경영체 등록 시 종사상 지위를 명기하여야 한다.</u>	시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동거세대원의 농업종사여부 및 종사상 지위 등이 없음 - 모든 농업인이 종사상 지위를 등록하도록 명시해야 함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2조 (정의)----- ----- 1. ~ 2. (현행과 같음)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따른 농업을 경영하는 경영체와 농업법인을 말한다.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개념적 혼란 수정

4.~8. (생 략) 제4조(농어업 경영정보의 등록)① (생 략) 1. <u>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u> 2. (생 략) ② ~ ③ (생 략)	4.~8. (현행과 같음) 제4조(농어업 경영정보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1. <u>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가족농가의 농업종사자와 그 종사상 지위, 제40조에 따른 -----</u> ----- ----- ----- -----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가족농가의 세대원이 아닌 농업종사자로 명시 농업종사자의 종사상 지위 표시 추가
--	--	--

3.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법 개정과 연계된 제도 개선

□ 공동경영인의 사회보장제도와 연계 문제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의 보장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보장은 경영체 등록과 관련 사업체로 인정받고 조세납부와 함께 사회보장제도 의무 가입과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임(정은미, 2020)

유럽과 일본의 농업경영체 등록과 사회보장

- 독 일 : 농업경영체의 조세법,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소득세· 상속증여세· 농업 부가가치세 감면
- 프랑스 : 농업사회보장공제에 의무가입, 4종류(질병, 출산, 고령, 재해, 퇴직 등)의 사회보장 급여지급, 종사장 지위에 따른 기여금과 보장의 차이, 공동경영주의 경우 기여금의 소득별 별도 납입(소득산정),
- 일 본 : 가족경영협약 농가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농업인 연금 납입금의 일부 지원

자료: 정은미(2020: 83-90)

- 경영체의 발전과 농업인의 안정적 사회보장을 위한 방안으로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세금납부 등에 대한 농업인의 반발이 예상됨. 또한 이 문제는 여성농업인뿐 아니라 모든 농가농업인의 문제로서 해결해야 할 장기적 과제임
- 직종별 사회보장 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 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보편적 사회보장체계 속에 포함됨. 산재보험을 제외한 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⁹⁾이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농업인의 조세납부와 무관하게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진행되어 옴
- 따라서 농업인 일반과 여성농업인은 종사상 지위와 무관하게 사회보장제도와 연계되어 있음. 법 및 제도의 경로의존성 문제 때문에 농업인은 물론 여성농업인의 경우 법률적 지위 확보와 사회보장문제를 연계하는 것의 소구력은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단 산재보험과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등 재해보장 제도에 대한 가입율은 55.5%이며, 특히 여성 가입률은 32.8%로 성별 격차가 뚜렷함. 또한 여성농업인의 기대수명이 남성에 비해 더 길지만 노후 준비는 미약한 편이므로 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을 위한 연금지원 확대 등 성별 격차 축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의 근거는 보편적 시민으로서의 권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특별한 유형의 근로를 담당하는 직업인, 저소득 농업인 등에 대한 사회부조의 성격 등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둘러싼 전반적 합의 과정이 필요함

9) 최근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계기로 농업인의 고용보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1.8%의 농업인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출산급여에 88.8%가 필요하다고 응답함(엄진영외, 2020). 농식품부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은 농업인 고용보험 제도가 일반화되면 제도 중복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임

□ 공동경영주의 농업정책과의 연계 문제

- 공동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의 차별성이 거의 없어 공동경영주가 실질적 위상이 정립되기 어려움
- 경영체의 육성을 위해 농가단위로 지급되는 정책자금의 신청과 수령은 (대표)경영자의 명의로 진행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영주가 경영체를 대표하여 수령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농민수당, 직불제 등 소득보조의 성격이 강한 지원금은 경영체 단위가 아닌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단위로 지불해야 함. 다만 이는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와는 별개의 문제임
- 여성농업인 대상 바우처 제도는 체감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나 지자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농가 당 1명의 여성에게만 지급하는 등 청년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바우처 제도 역시 복지성 지원으로 농가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지급으로 변경되어야 할 대표 사례임
- 정책자금의 지원 시 경영체단위의 육성정책 혹은 개인별 정책지원이 이루어 지지만 공동경영이 효율적인 후계자 제도 등은 (공동경영주 포함) 경영주 수(數)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이 필요함. 프랑스의 경우 부부후계자 제도를 두어 조건불리지역의 경우 1.5배의 자금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도 최근 부부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차등지원 제도화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경영체 독립 문제

- 경영체를 ‘가구’가 아닌, 하나의 ‘사업체’에 준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같은 세대원이라도 별도의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별도의 경영자원을 보유하고 사업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며 별도의 수입과 지출의 관리가 용이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독립적 경영체로 인정
- 후계자 포함 경영체 독립 등 공동경영주 농가의 경영발전 과정으로 인정
- 경영의 분리가 어려운 공유자산을 기본으로 운영되는 선도적인 경영체의 경우에는 법인화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 대책 필요

□ 겸업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지위 인정 문제

- 경영주는 전업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경영주로 등록 가능하며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는 국민연금법 상 사업장 가입자이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 가입자인 경우 제외

-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와는 달리 겸업이나 일용직에 종사할 경우 공동경영주 자격을 상실함.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이 바우처 사업 대상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농협조합원 활동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성차별의 문제를 가짐. (여성)농업인의 겸업은 농가재생산을 위해 필수적임(2019년 기준 농가소득의 42.1%)
- 공동경영주의 겸업소득을 인정하는 방안으로서 소규모 농가의 직접지불금 제도에 착안하여 공동경영인의 농업인 발급규정에서 최소 겸업소득을 2000만원 미만이고 영농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농업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안함(정은미 외, 2020: 60-62). 따라서 생계를 위해 겸업에 참여하는 여성 농업인의 공동경영주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으로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사회보장의 중복 문제는 피해야 할것으로 판단됨
- 직불제 시행을 계기로 세대분리 및 경영체 분리의 도덕적 해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아닌 농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가족원이 경영주로 등록하여 세대주=경영주라는 관습적 사고를 벗어나야 함

제5장 요약 및 결론

-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
 - 「농업농촌 기본법」에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를 선택하도록 함
- 상위법의 개정을 통해 종사상 지위를 부여하고 경영체법에 반영
 - 경영주,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임금노동자의 지위 부여
- 공동경영주의 개념 정립
 -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와 경영의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는 세대원
 - 경영주는 공동경영주의 위임을 받아 경영을 대표하는 대표경영주의 역할자
- 가족내의 공동경영에 대한 합의 과정 필요
 - 공동경영주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수록 세대원간의 경영에 대한 합의 과정이 필요함. 법과 제도의 정비와 함께 적극적으로 ‘가족경영

협약' 추진의 병행이 필요함

□ 공동경영인 지위 인정과 함께 법인경영으로의 발전 모색

- 프랑스 GAEC는 법인 설립과 함께 법인의 구성원 모두 독자적 경영주로 인정 받으며 10명내외로 구성되지만 대부분 부자(夫子)로 구성된 법인임(박민선, 1999). 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와도 법인구성이 가능함
- 여성농업인의 지위개선 논의를 계기로 가족농업법인, 부부농업법인 설립 논의를 검토할 수 있음. 현 농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경영체법 19조와 16조에 근거하여 설립됨. 가족 및 부부법인 역시 경영체법 등에 관련 법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할 것임
- 관련법에는 법인의 성격, 관련 법률상의 규정 준용여부(민법 혹은 상법), 사업범위, 설립요건 및 출자요건, 의결권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현재 농가의 현실을 감안하면 가족 및 부부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용 대비 편익은 크지 않을 전망이며 신규 창업농가나 개별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한 가족원이 공동경영체를 운영하는 경우와 같이 실제 법인 경영으로 발전할 농가는 소수의 선도농가일 것으로 보여짐

< 참고자료1 > 농장경영의 영역과 과정

기획(planning)	이행(Implementation)	관리(control)
1. 목표와 목적을 설정 2. 생산과 가격을 예측 3. 조건과 제약을 예상 4. 장기, 중기, 당해 연도의 전반적 계획 수립 5. 전략과 절차를 구체화 6. 성과 기준들을 확정 7. 장애문제를 예견하고 해결 방안을 예상 8. 관리결과를 기반으로 계획 수정	1. 토지 등 부동산자산 획득·유지 2. 노동력 획득, 훈련, 감독 3. 기계 및 장비서비스 획득·유지 4. 계획에 필요한 자본, 신용, 구입자재 조달 5. 작업일정 이행 6. 계획이행에 필요한 고용인, 이웃, 은행가, 지주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1. 생산, 판매, 재무성과를 측정하는 시스템 개발 2. 생산, 판매, 재무적 기록 3. 계획에서 수립된 기준과 실제 결과 비교 4. 수정되어야 할 행동들 확인

자료 : Michael D. Boehlje(1997), pp. 254-8.

< 참고자료2 >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의 영역과 지표

참여영역	참여의 내용	경영참여지표	경영인의 권리
• 성과 참여	• 업적 참여 • 수익 참여 • 이익 참여	• 정기적 수익분배 • 비정기적 수익분배	• 잔여청구권자
• 재산 참여	• 자기자본 참여 • 타인자본 참여	• 농지 및 경영자산의 공동 및 단독 소유	• 경영체의 소유자
• 의사결정 참여	• 정보 참여 • 협의 참여 • 결정 참여	• 정보의 수집과 공유 • 의사결정참여	• 경영의사 결정자
• 경영 대표권	• 대외적 경영대표	• 농장의 대표 • 출하권자 • 거래통장 명의자	• 경영의 대표자

※ 주: 기업에서의 노동자의 경영참여 영역을 기준으로 농업부문에 적용함

자료: 박민선(2003)

<참고문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20. 『2020년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포럼』
- 농림축산식품부. 2021. 『여성농업인 정책 자료집』
- 박민선. 1999. ‘ EC회원국의 여성농업인 정책’ 『농촌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방안 심포지움 자료집』, 농촌생활과학회· 농촌생활연구소
- _____. 2003. “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 측정을 위한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 『농협경제연구』 . 농협대학 농협경제연구소
- 안 석환, 진영택, 박지연. 2019.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엄진영 외. 2020. 『고용보험제도의 농업부문 적용 가능성과 과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소영 외. 2020. 『농가 및 농업인 정의에 관한 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은미. 2020. “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문제와 개선방안” . 『2020년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포럼』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정은미 외, 2020,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체 제도 개선 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Boehlje, Michael D., 1997 'Farm Management,' pp.254-258, Gary A. Goreham ed, Encyclopedia of Rural America-the land and people, ABC-CLIO
- Friedman, Kathie, 1984. 'Households as Income-Pooling Units', pp. 23-36, Joan Smith, Immanuel Wallerstein, Hans-Dieter Evers eds, Households And the World-Economy, Sage Publications
- Sachs, Carolyn, 1983. The invisible Farmers : Women in Agricultural Production. Rowman & Littlefield Pub Inc.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표준(안)

김황경산(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상임연구원)

- 목 차 -

제1장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개정의 필요성

제2장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및 조례 추진 경과

1.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법제도 제정
2.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과 조례 제정 현황
3.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추진의 성과와 과제

제3장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 표준조례(안)

제 1장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개정의 필요성

□ 성평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성별 격차 해소가 중요한 의제로 대두되었고 농촌 성평등 정책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는 2030년까지 도농격차 해소·여성 권리 향상을 명시하였고, 2018 UN에서 채택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선언> 제4조에서는 여성농민의 권한 신장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유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 제4조

1. 국가는 여성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고, 남녀평등의 원칙에 근거해 그들이 모든 종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며, 농촌의 경제·사회·정치·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참여하며 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목적에서 그들의 권한을 신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국가는 여성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음의 권리를 포함해 본 선언과 기타 국제인권법에 명시된 모든 종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차별받지 않고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 및 포용성장 달성의 핵심목표로 성별 격차 해소를 통한 양성평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성 확보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됨.
- 농식품부에서는 올 해부터 시행되는 <제5차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에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확대의 방향에서 정책 내실화를 위한 지자체 정책추진체계 강화(조례, 전담부서 등)와 성별통계 생산, 여성농업인 단체 및 정책패널의 협업을 통한 소통강화를 제시함.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2021-2025)> 일부 발췌

-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지자체 규정, 제도 및 추진체계 정비사항 모니터링 등 협조 강화
- 여성농업인의 정책 체감도 증진과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자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증원 강화
-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를 신규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에 양성평등 강화방안을 포함하여 개정토록 유도
-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사항을 반기별로 점검, 평가하고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환류
- 지자체, 여성농업인단체, 관련기관 등과 소통할 수 있는 상시 협의 창구를 운영하여 민·관 협력 강화
- 여성농업인을 코디네이터로 육성하여 영농여건 개선 및 여성농업인정책 교육 및 홍보
- 관련기관·지자체·여성농업인단체와 현안 논의를 위한 정기 협의회 개최

- 2007년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제정 이후 14년이 지났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농업농촌과 여성농업인들의 요구가 변화되는 것에 대한 반영이 필요함.
- 성평등 인식의 확대가 조례 제정과 개정의 내용에 반영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가 2007년부터 제정되어 14년이 지난 지금, 변화하는 농업농촌의 상황을 반영하고, 성평등 인식의 확산으로 개정이 필요함.

□ 지자체 조례의 실질적 효과를 위한 개선

-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가 2021년 8월 현재 139개 도·지·군에 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 명시한 위원회 구성 및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많은 지자체가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례가 여성농업인 전담 인력의 확보나 정책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지자체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 정비가 필요함.

□ 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의 반영

- 여성농업인육성법 제정 이후 여성농업인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 왔음. 2021년 현재, 제 1조 목적을 포함한 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목적에 성평등과 안전 개념 반영, 2) 여성농업 인육성정책 추진 체계 구축 3) 여성농어업인의 날 제정, 4) 자문회의를 심의 회로 위상 강화, 5) 성평등 교육, 6) 건강검진 관련 사항 등에 대해 개정 또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 2021년 현재, 국회에는 서삼석 의원과 김선교 의원 여성농업인육성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함. 개정 법안은 지난 5월에 회부되어 6월 농해수위에 상 정됨.

[표-1]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개정이유
성평등 개념 반영 (안 제1조· 3조· 제9조 제1호 개정 및 안 제2조의 6, 제5조 2항 마목 신설)	• 법안의 목적달성 수단의 명확화 •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고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안전 개념 반영 (안 제1조· 3조 개정, 제5조 2항 라목 신설)	• 여성농어업인의 안전이 취약한 현실을 감안, 여성농어업인의 권리 신장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과 생활환경에서의 안전 보장
국가· 지자체의 책무에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체계 구축의무 부여 (안 제3조 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어업인육성 정책의 추진 체계 구축 의무 부과
여성농어업인의 날 기념 (안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신설)	• 여성농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별도의 기념일이 부재함.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 10월 10일은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기본· 시행계획 수립 협조요청대상에 ‘전문가’ 추가 (안 제6조 제1항 개정)	• 현재 기본·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개정 (안 제5조 제4항,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개정)	• 여성농업인의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여성농어업인실태조사대상에 ‘성평등 실태 관련사항’ 추가 (안 제8조 제1항 개정)	• 현재 5년마다 여성농업인 실태조사가 일반 현황 및 복지 등 40개 항목으로 추진중이나 성평등 실태 확인을 위한 별도의 항목이 부재하여 추가하고자 함. 기본계획에 농어업농어촌 성평등 증진을 통한 성별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과제와 추진방법을 추가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

구	분	개정이유
		료로 활용하는 실태조사에 관련 항목 추가
귀농·귀어·귀촌여성, 청년여성, 다문화가족 여성의 농어촌 정착 및 전문인력화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 제9조 제3호 신설)		•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시책 수립대상에 ‘성평등교육 확대 및 관련인력 육성 추가’ (안 제10조 제1항 제5호 신설)		• 현재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해 양성평등교육과정 및 성평등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성평등 교육 지원 및 강사 등 인력 육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시책 수립대상에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추가 (제11조 제5호· 제6호 개정 및 제11조 제7호 신설)		• 농어업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광업, 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을만큼 높은 재해율 및 유병률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농업인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 점을 감안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여성농어업인의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근거 마련(안 제11조의4 제1항 및 제2항 신설)		• 국가 및 지자체가 여성농어업인의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 농어촌지역 내 여성에 대한 성범죄의 예방, 안전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의무 규정 신설

자료 :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서삼석의원 개정 법안

□ 지역농정 확대로 여성농어업인의 요구 반영

- 정부가 지방분권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농업·농촌 분야에서도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농정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역농정에서는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정책 추진이 미흡한 실정임.
-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에서 여성농업인에 관한 정책을 광역시도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앙 부처에서 제출된 계획의 일부를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들은 시군, 면, 마을단위에서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안전, 복지, 의료 체계 마련 등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논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제2장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및 조례 추진 현황

1.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제정

□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법과 조례 제정의 근거 마련

- 1998년 농림부 내 기획관리실 소속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200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제정함.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5조에 따라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현재 5차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시행중에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참여와 정책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실질적 여성농어업인육성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단체에서 지원조례 제정 운동을 전국에서 벌여나감.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정

- 1994년 발표된 농어촌 발전 특별대책은 우리나라 농업정책상 처음으로 여성에 관한 내용을 언급함. 1996년 여성농업인 단체의 제안으로 여성농민에 관한 정부정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농촌여성정책자문회의’가 농림부장관 산하에 설치되고 논의 이후, 여성농업인단체의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1998년 여성정책담당관실이 만들어짐.
- 1999년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의 제 14조에서 여성농업 인력의 정책을 마련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를 별도로 명시하고, 시행령 제 7조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의 수립, 시행을 규정함. 2001년 12월에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제정됨.

□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 조례 제정

- 200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정 이후, 이를 근거로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전국으로 제정이 이루어짐. 2007년 여성농업인단체에서는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에서 비중이 늘어나고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제기함. 이에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정에 근거하여 많은 성과

가 있으나 지역에서 여성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요구하게 됨.

- 여성농업인을 농업 전문인력으로 인정하고 육성하는 것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농정의 주역으로 세우기 위한 정책의 실현을 필요로 함.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성과가 있었으나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사업의 권한이 지방 정부로 이관되어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 지역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을 수립하기보다 농림부에서 수립된 기본계획의 골격 안에서 집행 가능한 사업과제를 수행한다는 과제가 제출됨.
- 2007년 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사)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사)생활개선중앙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가 구성되어 전국적으로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제정 활동에 나설 것을 결정함.
-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나설 수 있도록 하며 그동안 농업정책에서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소외와 배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한 지위를 바꿔나가기 위해 여성농업인들 스스로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함.
- 이를 통해 2007년 제정 이후 꾸준히 전국 각 도별로 확대되고 있음.

2.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과 조례 제정 현황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 과정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정 이후, 현행 법률에 대한 개선에 대한 여성농업인들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음.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

- 제정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농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몇 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 2013년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에 관하여 시도지사는 시도계획 반영할 것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 2018년 제 1조 목적에 모성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개정, 제 11조의 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을 신설함.

○ 여성농업인단체의 육성법 개정에 대한 여성농업인단체의 요구

- 중앙-도-시·군에 이르는 정책추진체계를 위한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재량 행위로 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은 법 제3조의 문구를 수정해 그 책무를 강화해야 함. 대부분의 지자체는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전담부서나 전담인력이 전무한 상황으로 농업인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나 농업정책과 및 여러 곳에서 나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전체 농업정책에 대한 담당자가 여성농업인정책도 병행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법조문 구분과 계획수립 및 평가규정을 강화해야 함. 육성정책은 육성법에 근거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하지만 미비한 법체제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강제성도 없고 시행계획 제출 시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시행계획을 별도로 규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마감일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는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구로 기능을 강화해야 함. 현행법에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변경시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단순 자문으로 연 1~2회 형식적인 만남으로 운영되고 있음. 자문위원회 자체가 개최되지 않으면 현장 여성농업인의 의견을 제출하기 어려움. 이를 위한 심의·조정·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위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여성농업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도우미 신설로 여성농업인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야 함.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의2에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도우미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개정해 여성농업인 교육도우미 신설로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생산의 한 주체로서 여성농업인 관련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인력이 지원되어야 함.
- 여성농업인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여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왔으나 주요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함.

□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의 전국적 확대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 3조에 근거하여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07년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아산시의 조례 제정 이후, 의원발의와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를 제정해 나감. 현재 전국 125개광역시군에 조례가 제정됨.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개정과 시행규칙 제정

-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는 여성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요구한 내용과 현행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근거하여 마련되어 추진해왔으나 미흡한 지점에 대한 개정 요구를 진행함.
- 조례 개정의 주요 사항으로 1) 여성농어업인육성 자문회의를 지역 여성농민 정책에 대해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육성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로 개정, 2)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의 실질적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제정 등이 있음.

[표-2] 시도별 조례 제정 현황(2020년 현재) _자치법규정보시스템 참조

시도	통합시군구 (전체시군구)	제정지자체 (광역포함)	해당시군구
부산	1(16)	1	부산광역시
대구	1(8)	1	달성군
인천	2(10)	1	강화군
광주	1(5)	4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구, 북구
울산	1(5)	3	동구, 북구, 울주군
세종	1(1)	1	세종시
경기	15(31)	9	경기도, 안성시, 남영주시, 가평군, 양평군, 포천시, 연천군, 평택시, 여주시
강원	15(18)	14	강원도, 원주시, 강릉시, 양양군,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속초시, 횡성군, 철원군, 화천군, 평창군, 고성군
충북	11(11)	12	충북도, 청주시, 음성군, 제천시, 괴산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단양군, 충주시
충남	15(15)	16	충남도, 공주시,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홍성군, 천안시, 청양군, 부여군, 논산시, 보령시, 계룡시, 금산군, 태안군, 당진시
전북	13(14)	11	전북도, 남원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임실군, 고창군, 군산시, 부안군, 진안군, 완주군
전남	21(22)	23	전남도,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강진군, 곡성군, 장흥군, 무안군, 진도군, 보성군,

			신안군, 해남군, 구례군, 함평군, 화순군, 장성군, 영암군, 목포시, 고흥군, 여수시, 완도군
경북	23(23)	17	경북도, 문경시, 상주시, 영주시, 성주군, 칠곡군, 청송군, 봉화군, 의성군, 영양군, 포항시, 영덕군, 예천군, 김천시, 경주시, 군위군, 구미시
경남	18(18)	11	경남도, 진주시, 거창군, 함안군, 합천군, 밀양시,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고성군
제주	1(1)	1	제주도
합계	139	125	

자료 : 2021 여성농업인 정책자료집, 농림축산식품부, 8월 현재 제정 상황을 반영하여 수정함.

3.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추진의 성과와 과제

1) 성과

□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 논의 체계 마련

- 조례 제정 직후 지역에서 여성농업인단체와 지자체에서 정책위원회 또는 자문회의 규정에 따라 회의 운영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의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의 과정이 마련됨.
- 나주시와 순천시에서는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에 마련된 위원회 규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나주시에서는 지난 2019년 시군단위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여성농민 업무를 다루는 전담부서가 생겼고, 농업정책과 안에 여성농업인지원팀을 신설하여 2명의 인력을 배치함. 여성농업인지원팀에서는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음. 강원도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정책협의회가 진행 중에 있음. 지원전담 인력도 배치되어 있음.
- 2019년 7월 30일 조례를 제정한 당진시의 경우, 지난 2020년 11월 첫 여성농어업인 육성위원회(위원장 윤재윤 농업기술센터소장)를 개최함. 여성농어업인 육성위원회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제정된 '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의거해 농어업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위원 6명과 당연직 위원 4명 등 10명의 위원들로 구성함. 향후 연 1회 이상 정기회와 임시회를 소집해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조정해 나가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함.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

-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를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고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속된 사례가 있음.

지역 사례

· 사례 1>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지원

- 지원조례에 <여성농업인 관련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넣어 이와 관련한 조례를 근거로 여성농업인센터가 2019년 6월 기준 전국 39개소 설치, 운영 중에 있음.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 고충 상담, 초중고교생 방과 후 학습지도와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사례 2> 농번기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여성농업인의 노동력 경감을 위한 정책으로 제안되었고, 지원조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음. 최근에는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음.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농번기에 20~60일 공동급식을 운영하며,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등으로 마을마다 180만~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2) 과제

□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의 논의 구조 운영 미흡

- 지자체 조례 분석 결과 14개 도농지역에서는 여성농업인이 참여하는 논의구조가 자문회의로 되어 있음.
- 지자체 조례에서 정기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대한 실태조사와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조례 집행을 뒷받침할 시행규칙 제정 필요

- 조례 중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규칙에서 정한다고 하였지만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곳은 일부 도농지역에 불과함. 제주도는 자문회의 운영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음. 다수의 지역에서 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나 마련되지 않은 시군이 많음.

제3장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 표준조례(안)

□ 주요내용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의 취지와 근거를 반영하여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마련함. 각 도·시·군별로 조례의 조항이 차이가 있어 현행 조례 중 한 가지를 기본으로 개정의 내용을 제안함.

※ 붉은 색으로 표시한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강조 표시함.

[표-3] 표준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과 근거 : 현행 조례 개정 예시

조례(현행)	표준 조례(안)	근거 및 비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3조에 따라 00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안전, 모성권 보장 ,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 농어업의 발전, 농어촌사회의 발전 ,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및 농어촌 지역의 (양)성평등 확대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 법안의 목적달성 수단의 명확화 •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고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	(신설 또는 개정) 도지사의 책무 또는 지원체계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어업인육성 정책의 추진 체계 구축 의무 부과
제6조(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 자문회의를 둔다. ② 제1항의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위원회 를 둔다. ② 제1항의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여성농어업인의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넣거나 또는 본 조례에 명시
제9조(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도지사는 이주 여성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	제9조(귀농·귀어·귀촌여성, 청년여성, 다문화가족 여성 의 농어촌 정착 및 전문인력화 지원)	•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

조례(현행)	표준 조례(안)	근거 및 비교
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귀농·귀어·귀촌 여성, 청년여성, 다문화가족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하고 전문인력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신설)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지원) ① 도지사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경기도 조례 참조 제11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지원) ① 도지사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검토사항

① 조례의 목적에 (양)성평등 명시

- 성평등 인식이 확산되어가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고자 함. 지역별 논의의 상황에 맞게 성평등 또는 양성평등의 목적을 넣을 수 있음.
- 성평등 용어를 사용한 조례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음.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군은 경기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음.
- 이 밖에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목적과 정책개선 권고 등의 조항에서 성평등의 용어를 사용한 곳으로는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진군이 있음.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로는 충청북도와 천안시에서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일생활 균형 지원의 도지사의 책무에서 성평등을 명시함.

[사례] 성평등 용어를 사용한 광역시군구 조례

[경기]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가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천안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시책인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북도] 전라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2조(정책개선 권고) ① 도지사는 제10조·제11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등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경상남도]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직장 내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 강진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강진군의 군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다른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정치 및 공직참여 영역에서의 성주류화 지원과 성평등 정책 확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② 정책 추진체계 구축

- 도에서는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마련할 수 있으나 인구와 재정 규모가 작은 시군에서는 전담부서까지 두는 것은 어려움. 다양한 도와 시군에서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체계 구축’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절함.

③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위원회

- 각 지자체별로 위원회(또는 자문회의)의 구성원은 10명 내외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 가운데 여성농업인이 어느 만큼 참석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곳도 많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는 여성농업인의 비중을 명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강원도 고성군의 조례에 따르면 위원장 1명을 제외한 10명 이내의 위원 중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어업인 4명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음. 경기도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고 있음.
- 경북도 김천시, 충북 충주시의 조례에서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중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는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참여 비중이 적은데 예를 들어 전남 여수시, 강원 횡성군의 경우에는 10명 이내 여성농민단체 2명 이내로 명시하고 있음.

④ 여성농어업인실태조사 실시

- 중앙 정부 차원에서 5년마다 진행하는 여성농어업인실태조사 외에 지역에서 별도로 실태조사를 집행하는 것의 의미와 실태조사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광역시도에서는 지역별 특성의 반영, 집행이 가능하나 시군단위로는 예산집행의 현실 가능성, 시군 단위의 독자적인 실태조사에서 내용의 차별성이 드러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쟁점사항

① 여성농어업인의 날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여성농업인의 날을 명시하여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모든 지자체 조례에 내용을 넣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함. 중앙부처에서 법으로 제정되면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조례내

용에 여성농어업인의 날에 대한 명시를 별도로 할 필요성이 낮아짐.

※ 현재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여성농어업인의 날 기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음.

② 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 일부 도·군에서는 가족공동경영협약에 대한 조항을 넣어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확대하고 있음.
- 가족공동경영협약의 경우 모든 여성농업인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기보다는 소외되는 여성농업인(예를 들어 고령의 독거 여성농업인, 청년여성농업인 중 비혼 등)이 있어서 모든 조례에 개정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사례] 00도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제3조(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인지 예산 및 성별영향평가 등 성별통계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 실현 등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이하 “가족협약”이라 한다), 지역사회의 참여 유도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의2(가족협약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족협약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가족협약은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문서화할 수 있다.

③ 가족협약서에는 협약의 목적, 경영계획 수립·평가, 경영의 역할 분담(가사분담을 포함한 다), 이익분배, 노동조건, 장래의 경영이양 등 다양한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표-4]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안과 표준조례안 반영 여부와 미반영 이유

육성법 개정안 항목	표준조례 반영 여부	미반영 이유
성평등 개념 반영	반영	
안전 개념 반영	반영	
국가·지자체의 책무에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체계 구축의무 부여	반영	
여성농어업인의 날 기념	미반영	근거법이 되는 육성법에 명시하게 되면 지자체별로 별도의 명시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의견 수렴 과정 마련 후 판단

육성법 개정안 항목	표준조례 반영 여부	미반영 이유
기본·시행계획 수립 협조요청 대상에 ‘전문가’ 추가	미반영	• 광역 시도 단위에서는 필요 여부 판단, 전체 시군의 조례에도 포함시킬 것인가의 검토 필요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개정	반영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 대상에 ‘성평등 실태 관련사항’ 추가	미반영	• 시군별로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귀농·귀어·귀촌여성, 청년여성, 다문화가족 여성의 농어촌 정착 및 전문인력화 지원 근거 마련	반영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시책 수립 대상에 ‘성평등교육 확대 및 관련인력 육성 추가’	미반영	• 근거법이 되는 육성법에 명시하게 되면 지자체별 별도 규정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의견수렴 과정 마련 후 판단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시책 수립 대상에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추가	반영	
여성농어업인의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근거 마련	미반영	• 육성법에 명시하고 중앙부처에서 관련한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지자체별 별도 규정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의견수렴 과정 마련 후 판단

<참고문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여농의원단협의회, 2007, 『2007 조례 제정 운동 백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기갑의원실 2010. 11.12.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2020. 『제5차[21~ 25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안)』
농림축산식품부, 『2021 여성농업인 정책자료집』

<참고기사>

[중도일보] 2020-11-20, 당진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위원회 개최,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역할 확대를 위한 첫 도약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01120010007532>

지정 토론

1차 강원·경기권역

안정미 (농가주부모임철원군 연합회 회장)

한영미 (횡성여성농업인센터 센터장)

안태윤 (경기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유명환 (강원도 농정국 농정과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사)농가주부모임 철원군연합회장 안정미

나는 강원도 횡성에서 태어났다. 비교적 평야가 적은 강원도에서 횡성 앞들은 “횡성원의 앞뜰 자랑”이라는 속담이 전해질만큼, 비옥하고 넓은 들로 손꼽혀 왔다. 당연히 한평생을 횡성에서 살아오신 부모님은 농사를 천직으로 아셨고, 그렇게 평생을 농업에 종사하셨다. 덕분에 나 역시 능력 있는 농업인을 꿈꾸었다. 그래서 농민 교육과 사회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했던 가나안 농군학교를 다녔고, 지금의 남편도 만날 수 있었다. 스무 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아마 그 때 나도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됐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라 확신한다. 1980년대에는 여성이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다. 남성에 비해 극히 소수 여성에게만 그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으로서 느끼는 불평등은 그 때부터였을 것이다.

지난 37년간 남편과 함께 농업인으로 살아온 나는 그저 거드는 손이었다. 수박과 배추 농사를 지으며 작은 일 하나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결정해왔음에도 말이다. 고이 길러내 수확하기까지, 그 모든 시간을 함께 했지만 법적으로 그랬다.

그러나 2016년 3월, 농업에 함께 참여하는 경영주 배우자의 양성 평등과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경영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이 때 도입된 공동경영주 제도는 여성농업인인 나에게 단비였다. 하지만 여전히 경영주의 동의를 얻게 함으로써 그 수동성을 벗어나지 못했다가 2018년 1월, 드디어 시행규칙 개정 2년 만에 경영주의 동의 없이도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록률은 낮다고 한다.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각 시도에서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외 농업인 여성배우자 중 공동경영주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는 77,915명 중 10,811명이다. 그 비율이 13.9%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다음으로 강원도가 36,879명 중 3,769명이 등록하여 10.2%의 비율로 두 번째다. 그 외는 10%도 채 되지

않는다. 1%조차 안 되는 곳도 있다.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라남도과 강원도가 다른 시도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전라남도는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가 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인 나주시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살고 있는 강원도에는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영월군에는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12월 27일 공표한 강원도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개정으로, 전국 최초 ‘여성농업인의 날’을 지정하기도 했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공동경영주 등록 비율이 높은 전라남도과 강원도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성 평등의 확산과 여성농업인 권리 증진을 위해 경영주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여성농업인도 당연히 농업인으로서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 이용권(바우처), 농민수당, 농가도우미(출산도우미), 출산 급여, 공익형직불제 등 다양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혜택 중 하나인 농가도우미(출산도우미)는 신청자가 없어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곳도 있다고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된 농촌에서 출산 가능 여성이 줄어들어 활성화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거나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경우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문제점을 개선하며 여러 가지 혜택까지 주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다양한 정책이 수혜자인 여성농업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체계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제대로 홍보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상황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인력과 예산 확보는 필수다. 또한 여성농업인 대다수가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동경영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좀 더 다양화시킬 필요도 있다.

더불어 여성농업인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식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의 입안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그와 함께 여성농업인 전담 부처와 전담 인력은 여성농업인이 참여 주체가 되어 입안한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조력자가 되어주어야 할 것이

다. 그래서 여성농업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농업 분야의 양성 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결국 모두가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갈 진짜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안동재의 딸, 임경순의 아내, 임애정의 엄마, 노윤우의 할머니로 불리는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여성농업인 안정미가 아닌 적은 없었다.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유지하고 자존감을 높여 줄 공동경영주 제도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언젠가는 말 그대로 공동의 경영주로서 모든 것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언제까지나 농부라던 피에르 라비는 생명농업학자이자 철학자이다. 그가 중심이 되어 2007년 만든 생태협동조합 콜리브리(Colibris)! 벌새라는 뜻을 가진 콜리브리 철학처럼 “각자 자기가 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되면 세상은 비로소 바뀔 수 있다.” 지금 우리 여성농업인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불이 난 숲의 상황을 한탄하며 기운을 고갈시키느니 내가 옮길 한 방울의 물에 최선을 다했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 벌새처럼, 나 역시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어쩌면 그동안 반쯤은 포기하고 반쯤은 상황에 맞춰가며 살아왔던 내가,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토론회 자리에 있는 것, 이 또한 그 시작이 되리라 믿는다.

여성농업인 정책 간담회 토론회

횡성여성농업인센터 센터장 한영미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법적, 직업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제를 갖고 투쟁해 온 세월도 긴데 아직도 갈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우선 영농여건개선교육을 하면서 지역에서 제기되는 여성농업인 문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성농업인센터 대표를 맡고 있어 농사를 짓고 있어도 공동경영주에서 탈락 되었는데요. 전국센터 대표님들이 모두 다 겪은 일입니다. 경영주는 겸업을 해도 등록이 가능하니 경영주로 등록하면 될 거 아니냐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가정 내에서 합의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겸업으로 인해 공동경영주에서 탈락되었을 때 누가 경영주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남편과 논쟁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보다 농업 관련 법인을 갖고 있는 남편이 경영주가 되는 것이 “더 농민스럽다”라고 이유로 공동경영주를 포기했었는데 교육 중에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집안 살림을 위해 겸업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경영체에서 탈락된 여성농업인들이 꽤 있었고, 앞으로 모든 정책 사업에서 배제되니 꼭 등록하시는 말씀에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동경영주가 아니어도 행복바우처도 신청할 자격이 되었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도 군과 농협에서 꼬박꼬박 가입해 주었는데 경영체등록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행복바우처, 농작업안전재해보험대상에서도 제외가 되며 모든 정책 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더 답답해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동안 농가경영체 등록제도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성 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경영주의 배우자에 한해서 공동경영주라는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오랜 투쟁의 성과로 이해하고 있었던 터라 최근 공익형직불제, 농민수당 등에서 배제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허탈한 마음에 이젠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경영체 등록제도가 부족한 부분 있어도 현실에선 그나마 경영체 등록이 있어야만 각종 정책 사업이나 지원에서 배제가 되지 않고 농업인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상황으로 영농여건 개선 교육 등 여성농업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선 교수님의 발제 자료에 의하면 여성농업인의 농가재생산을 위해 다른 직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와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은 성차별적인 조치임을 명확히 하고 시정하기 위한 보완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경영체 등록만을 홍보했는데 영농코디네이터 교육 안에 세대주= 남자, 남자=경영주가 당연하다는 인식을 바꾸어 나가자는 교육도 함께 넣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횡성지역은 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여성농업인관련정책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을 위한 영농코디네이터 활동, 강원도 및 횡성 여성농업인정책협의회 참여,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참여, 농촌형성평등양성강사활동등을 하면서 조금씩 변하는 것 같긴한데 딱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없고 이일 저일 일단 도전해보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농촌사회건설을 위해, 성 평등한 농촌사회로 나아가기위해 우리가 지금 해야 할일들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과제를 찾아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으로 올라온 여성농업인육성법과 조례안을 보고 있자니 저절로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힘이 생길까요?

성평등한 농촌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전한 사례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횡성은 여성친화도시로 작년에 농촌형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발굴을 위해 횡성군 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와 강원여성가족연구원과 함께 특화사업을 발굴했고 올해 횡성군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횡성형여성일자리사업과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정책 사업이지만 현재 이 시범사업은 주민복지과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편으로 아쉽지만 부처 간에 협력과 합의점들이 찾아진다면 앞으로 좋은 더 나은 정책 사업이 될 거라 믿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농림부에서도 우리의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법과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또 작년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에서 농촌지역성평등문화실태조사를 한바있었지요. 강원도에서 실태조사를 함께 했고 강원도만을 별도로 해서 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써 먹어야할지? 전국통계와 지역통계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역실정을 반영한 통계자료는 지역의 여성농업인정책의 목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성평등 실태조사내용이 육성법 개정안에 반영된 부분이 있으니 힘이 납니다.

또 작년에 강원농업인안전보건센터에선 강원도여성농업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관련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했고 올해 2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이라 대접받은 검진'이라고 극찬을 했던 사업인데 내년에도 여성농업인특수건강 검진관련 예산을 확보할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기재부에 가서 얼마나 많은 하소연과 설득을 위한 수고를 했을지 눈에 선하기도 합니다. 현장 여성농업인들이 '여성농업인이어서 받는 대접'이었다고 한 특수 건강검진도 포함해 여성들을 건강한 삶과 안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육성법에 넣는다는 내용이 있다니 또 힘이 납니다.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과 안전을 책임지는 법을 만들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에 저절로 신이 나며 여성농업인들을 신나게 하는 것이 여성농업인전담부서의 위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덕분에 성 평등한 농촌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법과 조례개정안에 함께 만들어보자고 제안해주시는 것도 힘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센터 설치관련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연구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원도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공약으로 6개소 신규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1개소도 개소를 못했습니다. 센터를 운영할 사람이 없기도 하지만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도 센터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설립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처 주요 업무 관련해 각종 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을 보니 저희와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다함께돌봄센터나 마을교육공동체등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시군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사업자를 선정해 위탁을 주거나 시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 정책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부의 다함께돌봄센터처럼 농림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센터 건물을 확보하고 운영자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여성농업인센터를 늘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다른 부처, 다른 과의 사업에 기웃거리며 조금이라도 여성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 일을 하다보니 남의 사업하지 말고 일 좀 벌리지 말라는 충고를 많이 듣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여성농업인육성법과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를 통해 여성농업인관련 사업을 오로지 농림부사업으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며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성농업인 정책 간담회 토론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안태운

□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 전반적으로 발제자의 발제내용에 공감하고 동의함. 다만, 몇 가지 의견을 추가하고자 함.
- 표준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 추가된 ‘농어업의 발전, 농어촌사회의 발전’이 필요한지 의문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이니만큼 조례의 주목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이에 대신하여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참여 보장’ ‘성별격차해소’ 등을 추가하는 안을 제안드림. 참고로 농어촌지역의 여성 이장비율은 도시지역의 통장에 비해 매우 낮고 증가세도 매우 둔함. 농어촌지역의 가부장적 문화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
- ‘보육여건 개선’은 ‘돌봄여건 개선’으로 아동 뿐만 아니라 노인까지 확대한 돌봄여건 개선을 제시하면 좋겠음. 현실적으로 농어촌은 고령화로 여성농어업인의 노부모 돌봄의 부담이 크기 때문임.
- 제1조의 정책추진체계 구축은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와 전담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됨. 즉 전담인력이 성평등정책 전문가가 아니면 성평등(성인지)관점에서 정책을 기획·실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임.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성평등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등의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표준조례안 제9조에 북한이탈여성, 외국인여성, 장애여성 등 다양한 소수집단 여성을 추가하는 안을 제안함.
-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비율도 중요하지만, 성평등전문가(젠더전문가)가 다수 포함되어야 함. 현실적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모르는 남성 농업인 단체 대표가 관습적

으로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가 많아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과 농어촌지역사회의 성평등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조례안에 위원은 ‘여성농업인 관련 전문가 및 여성농업인 단체 회원에 한함’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가족공동경영협약의 경우, ‘가족’의 범위 확대가 필요함. 작년 여성가족부의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70%가 혼인과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혼인과 혈연에 기반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벗어난 가족개념이 확장된다면, 친구 등과 같이 농사짓고 공동생활을 하는 비혼여성들도 이 협약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여성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인정 방안

- 공동경영주의 등록 요건이 경영주의 배우자이나, 앞서 제시한 우리 사회의 가족 개념의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사실혼, 동거인 등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무엇보다 공동경영주는 성별과 세대주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경영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포함되어야 한데 동의함.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강원도 농정국 농정과장 유명환

가. 강원도 여성농업인 현황·실태

강원도 농업인 중 여성농업인이 50% 이상 차지, 여성농업인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여성농업인 점유율은 지속 증가추세로 여성후계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여성농업인이 가장 많은 연령은 60~64세>55~59세>65~69세로, 55세 이상이 전체 여성농업인의 75.7%를 차지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의 비중은 2010년 이후 점차 증가 추세이다.

농가규모·유형별 맞춤형 농정추진 및 정책자금의 중복·부당지급 최소화를 위해 농업경영관련 정보(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 사업을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으나, 농업인이 겸업을 하는 경우 경영주는 사업지원이 가능하나, 공동경영주는 농업경영체에서 등록 제외로 지원이 불가하다. 농가 내에서 대부분 남성은 경영주로, 여성은 주로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여, 공동경영주가 다수인 여성농업인은 각종 보조 사업에서 지원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여성농업인을 농업인으로 인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강원도는 '09년 7월 강원도 여성농어업인인 육성·지원 조례, '15년 12월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하여 여성농업인 육성과 양성평등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도내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다. 도에서는 조례 미제정 시군이 조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속 안내·독려 중이다. 1~5차('01~'25년)에 걸쳐 강원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주요 성과

강원도에서는 '21년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3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 복지 확대 58억 원, 노동부담 경감 37억 원, 농촌보육여건 개선 8억 원으로 총 103억 원 지원하고 있으며, '19년 대비 67% 확대하였다.

복지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여성농업인의 복지확대를 위해「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을 '15년에 시작하여, '21년 현재까지 지원 연령 확대(만60세→만 75세), 지원금액 확대(10만원→20만원), 사업량 확대(10천명→26.4천명), 자부담 폐지 등 지원 혜택을 확대하여, '15년 대비 사업비가 5,180%가 증가하였다.

노동경감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여성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부담 경감과 지속적이고 안전한 농업 활동을 위해「노동경감 지원 사업」을 '18년부터 시작, 전국 최대 규모 연간 3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에게 고착화 되어 있는 가사부담 경감과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농촌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19년 횡성군을 시작으로 현재 18개 시군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건강보호·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여성농업인 근골격계 특화검진」사회보장장제도(신설)을 전국 최초로 협의를 완료('20.2월)하였으며, 강원도대학교 농업안전보건센터와 업무협약체결('21.5월)로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여성농업인이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지위 향상을 위해 '19년 12월 조례 개정을 실시, 전국 최초로 강원도여성농업인의 날(매년 10월 15일)을 지정('19.12월)하여, 강원도 여성농업인의 날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정책의 체계적 제시 및 장기적인 여성정책 수립을 위해 여성농업인 전문관을 지정('19.7월/1명)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으로 중장기적 정책 마련을 위해 여성농업인 자문회의 구성('19.12월) 및 여성농업인과의 소통 강화로 수혜자 중심 정책실현을 위해 여성농업인 단체, 여성농업인 센터가 참여하는 여성농업인 정책협의회를 구성('20.1월)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방향

여성농업인의 지위 강화를 위해 농업경영체에 주로 등록하는 형태인 공동경

영주의 겸업을 인정토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며, 여성농업인이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에 참여, 활동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농촌여성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동부담 경감과 지속적이고 안전한 농업 활동을 위해 건강보호 정책 사업 추진, 여성농업인의 특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 조직을 육성하고 확장하여 농촌인구 고령화 및 농촌사회 공동화에 지속 대응 할 계획이다.

농촌에서의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다양화 되었으나, 여전히 타 산업에 비해 성별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농촌형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며, 여성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 성평등 교육을 실시, 이를 지속 확대 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정책사업 발굴 추진하고, 여성농업인과의 소통강화로 여성농업인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사업 지속 발굴 등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으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

지정 토론

2차 경북·충남·충북 지역

이소희 (전 청년여성농업인연합회 회장)

이진희 (생활개선회 경북연합 회장)

김대식 (경북도청 농업정책과 과장)

남영숙 (경북도의원)

여성농업인 정책 간담회 토론회

전 청년여성농업인연합회 회장 이소희

- 세대별 공동경영인 현황 파악 필요 및 공동경영주 外 여성 단독 경영체 등록의 경우 또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짐.
- 대부분의 청년 여성농업인들의 경우 공동경영주로서의 필요성을 느끼는 농업인 보다는 가족 종사자로서의 경영주 (배우자가 아닌 자녀의 입장) 로서의 제도 개선, 혜택 결여 등에 대한 문제적 상황을 느끼고 있음.
- 현재 청년농업인의 경우 정책적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경우 만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이며 무조건적인 독립 경영체로 등록을 해야 함이 있어 많은 청년 여성농업인들이 청년농업인으로서 현재 독립 경영체를 등록하였음.
- 청년 여성농업인들의 경우 독립경영체등록자(약 30%), 부모(농업경영체등록자) 밑에 가족 종사자로서의 등록자(약60%)로 나타나고 있으며 요즘 추세적인 현황으로 독립 경영체 등록을 하거나 부모님 밑 가족종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여성농업인이 결혼을 할 경우 배우자와 농업형태를 함께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의 현황도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른 세부적인 통계 조사와 여성농업인들의 지위향상, 농업 경영주로서의 역할 및 법적 지위 등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의 제도나 현실적인 지원, 정책사업, 혜택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여성농업인 정책 간담회 토론회

(사)한국생활개선경상북도연합회 회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한국생활개선경상북도연합회장 이진희입니다.

앞선 두 분의 주제발표 자료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도 선도적인 농촌여성농업인 단체로 농업농촌의 발전과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9년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출범에 이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내에 여성정책특별위원회가 조직되어 오늘과 같이 지역간담회를 통해 필요한 정책들을 수렴하시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항경산 연구원님의 주제발표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표준(안)’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단위에선의 교육, 안전, 복지, 의료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논의 체계가 지역농정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시도별 여성농업인전담부서가 시도별로 도단위 6곳, 기초단체가 나주시 포함 4곳으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대부분 농업관련부서에서 함께 업무를 맡고 있어 중요하게 다뤄지고 반영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단위에서 좋은 정책이 마련되어도 현장까지의 전달과 실현이 쉽지않아 어떤 정책이 마련되어졌고 시행되어지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교육은 여성농업인 정책을 알고 고된 농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농작업편이장비 소개는 매우 신선하고 효과적인 사업이었고 우리 생활개선회도 올

해 충청북도지역 11개 시군 120개 마을을 찾아 실시하였는데 여성농업인들도 모르고 있던 정책수혜를 체감했을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일부 참여하여 교육을 함께 받아 교육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을 찾아가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농업인 육성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20개 시군에 그치고 있어 전체시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권고가 아닌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여 여성농업인 정책 연구와 실현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 20억이 수립되어 2022년 9,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점차 확대될 예정이나 자부담 10%와 같은 조건을 삭제하여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정책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님이 발표하신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한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인정방안’에서는 현실적인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지위를 잘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가부장제의식이 강한 농촌사회에서 농가단위로 수혜가 돌아가는 정책들 직불제, 농민수당 등에서 여성농업인이 열외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위향상을 위해 마련된 ‘공동경영주’제도 역시 경영주와 동등한 지위 및 권리를 갖지 못한 형식적 종사자 지위에 그치고 있어 ‘공동경영주’의 실질적인 지위보장을 마련되어야 겠습니다.

별도의 영농경영의 분리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경영체 등록이 가능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으로 대등하고 독립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공동경영주의 겸업소득 인정방안 역시 현실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본인의 직업적 지위를 ‘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로 인식하는 경우는 38.4%이며, 현재 여성의 농업인의 지위를 남성과 비교하였을 때 ‘예전보다 높지만 남성보다 낮다거나 여전히 남성보다 낮다’는 의견이 81.8%로 나타났다.

이에 농촌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성평등한 농촌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성인지교육을 통해 남성들을 교육하고, 여성스스로의 인식을 함께 높여나가며

이를 위해 우리 생활개선회에서는‘가족경영협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료에 언급된 일본의 사례처럼 ‘가족경영협약’농가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농업인 연금 납입금의 일부 지원과 같이 우리도 농업노동의 부담과 함께 가사노동의 이중고를 안고있는 여성농업인의 어려움을 ‘가족경영협약’추진을 통해 공감하고 인식을 통해 확대해 나가기 위해 수료농가에 대한 적절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업인구의 51%를 차지하는 여성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 실질적인 권익신장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연구에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현장 간담회를 통해 미처 파악되지 않았던 문제와 이에 대한 보완책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정책 방향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과장 김대식

I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현황

- 전국 최다, 도내 농가인구 중 절반 이상 차지
 - 전국 여성농업인 1,144,841명 중 경북 188,127명으로 전국 1위(16.4%)
 - 경북 188천명 > 전남 157 > 경기 141 > 경남 136 > 충남 133
 - ‘19 경북 농업인수 368,693명 중 여성 188,127명(51%)
- 지속적인 농촌 인구 유출로 농업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심화
 - 최근 10년간(‘07~’16) 도내 청년 인구 연평균 6,670명 순유출(취업 및 진학 목적)
 - * ‘19년 도내 20대 99백명(20대의 3.3%), 30대 15백명(0.5%) 순유출
 - 여성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여성 농업 주종사자는 64%로 여성농업인의 고령화가 뚜렷하고 반면 40세 미만의 젊은 여성 농업인은 1% 미만으로 농촌공동체 위기 증대
 - * 경북 여성농업인 : ‘10년 251천명(51.1%) → ‘15년 208천명(50.8%) → ‘19년

188천명(51%)

- 65세이상 : '10년 98천명(49%) → '15년 103(55%) → '19년 112천명(64%)
- 40세미만 : '10년 4.6천명(2%) → '15년 2.2천명(1%) → '19년 0.9천명(0.5%)

□ 여성농업인 역할 및 비중은 증대, 사회·경제적 지위 인증 미흡

- '20년 도내 농업경영체 경영주 268,283명 중 여성은 72,670명(27.1%)이며, 공동경영주 등록한 여성농업인은 6,464명에 불과

* '20년 공동경영주 등록 현황(경북) : 7,351명(남 887, 여 6,464)

- 농업의 높은 노동강도와 농사/가사 병행에 대한 부담이 많으며 여성농업인의 직업인으로서의 지위 인식이 여전히 낮음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직업적 지위 인식('19년,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무급가족종사자 인식 76.3% > 공동경영주 16.1% > 경영주 4.2% 順

Ⅱ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현황

-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개정 확대 운영 및 농정관련 위원회 여성 참여율 단계적 확대

-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20.9.25.)

- 전담조직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지원 체계 신설

□ 여성농업인 전문관 직위 지정으로 여성농업인 정책 전문성, 소통 강화('21. 7)

□ 경상북도 농정관련 주요 위원회 여성 비율은 41.4%로 확대

-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서 여성 수요자 의사 정책 반영

— <농정 관련 주요 위원회 여성 비율> —

- | | |
|---------------------|----------------------|
| ▶ 농업·농촌식품산업심의회 40%, | ▶ 경북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41.2% |
| ▶ 친환경급식심의위원회 44.4%, | ▶ 우수농산물심의위원회 40.0% |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주 등록 유도

- ('16.3)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 → ('18.1) 경영주의 동의 없이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되어 등록 홍보·유도

※ 경상북도 공동경영주 등록 현황

: '19년 : 6,726명(남 773, 여 5,953), '20년 : 7,351명(남 887, 여 6,464)

□ (직업역량강화) 농작업 여건 개선 및 경영·창업능력 향상 도모

□ 여성농업인 농작업편의장비지원 : ('16년 최초시행)8,500대, 46억원

- 농작업용 의자('16~'17), 주행용 예초기('18), 다용도 작업대 지원('18~)

□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지원('17년 시행)

- (~'21년까지) 75개소, 60억원(관리기, 파종·정식기, 수확기 등)

□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바우처 사업 및 여성농업인센터,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도모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지원 : ('17년 시행)81,000명, 122 억원

- 사용처 확대(당초 33개 업종 → '20년부터 전 업종 확대 시행)
- 카드 발급처 지역농협(지점)까지 확대하여 사용자 편의성 도모

□ 농촌지역 농업인 자녀 보육 및 교육 부담 경감과 문화·복지 공간 확보로 여성농업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 여성농업인센터(1개소) 및 농촌보육정보센터(8개소), 사랑의 공부방(7개소),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13개소), 이동식 놀이교실 (1)

□ 출산농업인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단가 현실화('17년 4만원 → '21년 7만원)

□ (다양한 농촌여성 양성) 귀농 및 결혼이민자 농가 대상으로 미래 농업 인력으로 양성 및 농촌공동체 동질성 강화

□ 경상북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교육과정 개설 ('17.9월)

-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시 여성농업인 선발 우대

□ 결혼이민자 소득증진지원 및 농어촌진흥기금(융자) 지원

- ('08~'21년) 1,200농가, 200억원

미흡한 점

- 여성농업인 정책 자문기구 구성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 등 현장과의 소통 창구 필요
- 제4차 계획에 따라 도내 전 시군까지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16개 시군까지만 제정
 - * ('15년까지) 6개 시군 → ('21년) 16개 시군까지 확대
 - * 미제정(7) : 안동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울진군, 울릉군
-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이 복지, 보육 등 특정 사업에 치중되어 양성평등, 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 정책 사업 개발 필요

Ⅲ 향후 추진 방향

□ 성평등 인식개선 및 문화확산과 여성농업인 지위·역량 강화

- 농촌사회 구성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을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
 - 주요 농업·농촌 교육 기관 교육과정 내에 양성평등 교육 확대
 - * 교육기관 : 도 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경북농민사관학교 등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양성한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 활용
- 여성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여성특화교육 확대 등 교육과정의 성인지적 개편을 위하여 교육운영기관 협력 강화
- 여성농업인 역량·지위 강화와 지역사회 역할 지원
 -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교육 실시를 통해 지역개발 기획·운영에 필요한 전문능력을 배양하여 마을리더로 육성

- 시·군별 공동경영주 등록 현황과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참여 사례 공유,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 도모
- 농번기 공동급식, 어르신 돌봄, 지역행사 등 여성농업인이 주도하던 기존의 비공식적 지역사회 활동 수행 단체의 사회적경제 조직화 유도

□ 여성농업인 수요자 중심의 시책개발과 정책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연 거버넌스 구성

- 여성농업인 정책 참여를 위한 여성농업인 단체, 농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정책협의회』 구성, 소통 창구로 활용하여 현장체감형 시책 마련
-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도내 전 시군 제정 확대 및 제정 조례가 실질적인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 농촌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여성농업인으로서 직업적 의욕 고취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과제 발굴과 지원사업의 사업단가 현실화
 - 출산농가 농어가도우미 지원 단가 현실화 및 배우자까지 지원 확대
 -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 기간 중 10일 이내 지원(남녀고용평등법준용)
 - 농어촌지역 보육·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 농촌마을 공동급식 활성화를 위해 시설개보수, 조리사 인건비, 식재료 구입비 등 운영 지원 확대

- **노동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
 - 여성농업인 노동 부담 경감을 위한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확대**
 - 농작업중 화장실 사용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들녘 인근 간이화장실** 설치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생활기본권 보장과 건강증진 도모
- **농촌 여성농업인의 문화적 소외감 극복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상향 등 지원 확대
- **지역사회의 다양해진 여성농업인 구성원의 사회적 통합과 새로운 농촌 인재 육성**
 - 도내 농촌지역 노령화, 인구 감소 등 후계인력 급감에 대비하여 **청년, 귀농귀촌인 영농기반 확충** 지원으로 미래 농업인력 육성
 - **결혼이민여성 영농교육 및 지역사회 참여 제공** 등 안정적 정착 유도
 - **고령농, 귀농·귀촌, 청년농, 결혼이민** 등 다양해진 농촌사회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대·계층간 융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IV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 **공동경영주 등록에 따른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여성농업인의 직업상 지위 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현재 공동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의 차별성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다양한 농업정책과 연계를 통해 인센티브 제공 등 공동경영주로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건의

□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향상 등 관련 사업의 국가정책화 및 지원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 행복바우처 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별 재정상황 등에 따라 지원내용과 기준의 편차가 큰 실정으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과 사업의 확대를 위해 국가정책화 건의

* 도별 지원액 격차 : 강원 20만원(자부담 없음) / 경남 13만원(자부담 2.6만원)

* 비교사례 :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업으로 웹페이지 구축 등 사용자 이용편의 제공

□ 여성농업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수건강검진사업 지원 건의

- 농업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높은 육체노동 강도로 근골격계 등 질환에 취약하며, 농촌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특수건강검진 반드시 필요

□ 여성농업인 권익향상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지원

- 공동경영주 등록 등 여성농업인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 확산 및 농어촌지역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주제로 한 다양한 홍보자료(영상, 포스터, SNS 카드뉴스 등)를 지자체 및 여성농업인단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배포 건의

여성농업인 정책 간담회 토론회

경북도의원 남영숙

1. 여성농업인으로 살아가기

농한기에는 농사 준비에, 농번기에는 농사일로 여성농업인은 바쁘다. 엄마로, 부인으로, 며느리로, 새댁으로 농촌여성은 더 바쁘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에 살고 사회에서는 차별과 성차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농촌 여성에게는 차별을 체감할 여유도 불평할 틈도 없다.

농촌에서 여성은 일하기도 살아가기도 불편하다. 여성에겐 너무 불편한 농기구·농기계는 전부 남성의 신체에 적합하게 맞춰서 나왔다. 그래서 농기구·농기계를 여성은 다루기 힘들고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지만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농업에 남성만 종사하는 것은 아니다. 농촌인구와 농업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이다.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여성에게 적합한 농기구·농기계를 만들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작아서 만만해 보이는 관리기는 오히려 여성이 다루기 힘들고 트랙터는 차라리 편하다. 관리기는 소규모 여성농업인에게 꼭 필요한데 시동을 걸기도 힘들고, 질질 끌려가고 튕겨나가 위험하다. 하지만 트랙터는 그렇지 않다. 고민해볼 일이다. 경운기와 예초기는 위험하고 힘들어서 통과다. 여성이 농사를 지으려면 일당을 주거나 품앗이를 해야 한다. 남자 없이 이 모든 작업을 하는 여성은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지만 이러한 여성농업인은 거의 없다.

여성이 혼자서 농사를 지으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 여성이 농사를 업으로

삼는 것은 직업선택으로 보지 않는 경향도 있다. 남편이 농사를 지어야 농사를 짓는 것이고, 남편이 귀농귀촌을 해야 남편 따라 귀농귀촌을 한다. 여성이 농업을 하는 것을 자발적인 선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여성농업인 혼자 농사를 지을 때 받는 평가이다.

만약 농촌에 여성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실상 여성이 농사일이든, 집안일이든, 마을일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상당히 주도적인 입장이지만 지위는 그렇지 못하다. 여성이 농촌사회에 주도적 위치에서 자리 잡지 못한다면 농촌공동체의 유지는 어렵게 될 것이다.

여성의 노동 가치가 온전히 존중받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여성이 농사를 혼자 지을 수 있고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편화 해주어야 한다. 농촌사회에 공동협업의 문화를 정착시켜 여성농업인이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여성농업인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농촌이 되어야 우리 농업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2. 여성농업인의 지위

2019년 통계청 성별농가인구를 살펴보면 2백24만5천명 중 남성은 1백10만명으로 49%, 여성은 1백14만5천명으로 5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경영주를 보면 100만7천명 중 여성경영주는 18만7천명으로 18.6%에 불과했다. 2018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한 여성농업인은 37.3%, 집이나 건물을 소유한 여성농업인 비율은 36.4%에 불과했다.

농업 주종사자 및 경영주

(단위: 천명, %)

구분		2010년			2015년			2019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농가 인구	전체	3,063	1,562	51.0	2,569	1,305	50.8	2,245	1,145	51.0
	15세 이상	2,793	1,433	51.3	2,420	1,233	51.0	2,147	1,097	51.1
농업 주종사		1,846	968	52.4	1,664	864	51.9	1,453	763	52.5
경영주*		1,177	218	18.5	1,088	194	17.8	1,007	187	18.6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여성농업인은 농가 인구의 절반 이상을 구성하며 농업 노동과 농외소득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농업인이 농업활동과 가사노동으로 농가 경제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는 여성농업인이 많아 농업정책 사업에서 배제되고 농협조합원으로 가입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족과 함께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으나, 공동경영주의 권리와 지위는 제한적이다.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3. 여성농업인 정책의 변화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사회분야를 막론하고 남성과 여성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성평등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중요한 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농촌여성은 일과 가사노동을 병행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어 여성정책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2018년 유엔에서 채택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선언’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에서는 2030년까지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해 여성의 권리를 향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했다.

유엔은 국가는 여성 농민과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고, 남녀평등의 원칙에 근거해 모든 종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하고, 농촌의 경제·사회·정치·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참여하며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신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가가 여성 농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차별하지 말고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 및 포용 성장 달성을 위해 성별격차 해소를 통한 양성평등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2015년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남성과 여성의 동등성 확보로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한편 농식품부에서는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확대와 정책 내실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지자체 규정, 제도 정비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농업인단체, 관련기관 등과 소통 및 협의 창구를 운영,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및 여성농업인정책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려하고 있다.

4. 여성농업인 관련 법령

현재 농촌여성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여성농업인 육성법」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제정한 여성농업인 육성 관련 자치법규가 있다. 「여성농업인 육성법」은 2001년 12월31일에 제정되고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

되어 2019년 12월까지 13차례나 개정되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건강한 농촌 가정 구현, 농업 발전, 농촌사회 발전과 축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농촌의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조례가 2007년에 최초로 제정되었다.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조례는 2021년 8월까지 139개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있으나 농촌 여성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 않고 있어 조례의 실행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관련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농촌여성정책 전담 인력의 확보, 관련 사업개발 등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단체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국회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성평등과 안전 개념 반영, 여성농업인육성정책 추진 체계 구축, 여성농어업인의 날 제정,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심의회로 위상 변경, 성평등 교육, 건강검진 관련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내용

구 분	개정이유
성평등 개념 반영	• 법안의 목적달성 수단의 명확화 • 성평등 개념 규정

구 분	개정이유
안전 개념 반영	여성농어업인의 안전이 취약한 현실을 감안, 여성농어업인의 권리 신장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과 생활환경에서의 안전 보장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체계 구축의무 부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추진 체계 구축 의무 부과
여성농어업인의 날 기념	여성농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별도의 기념일이 부재함.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 10월 10일은 여성어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기본· 시행계획 수립 협조요청대상에 전문가 추가	현재 기본·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개정	여성농업인의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여성농어업인실태조사대상에 성평등 실태 관련사항 추가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성평등 실태 확인을 위한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농어업농어촌 성평등 증진을 통한 성별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 과제와 추진방법을 추가함
귀농· 귀어· 귀촌여성, 청년여성, 다문화가족 여성의 농어촌 정착 및 전문인력화 지원 근거 마련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함.
성평등교육 확대 및 관련인력 육성 추가	현재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해 양성평등교육과정 및 성평등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성평등 교육 지원 및 강사 등 인력 육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지원추가	농어업이 높은 재해율 및 유병률을 보여 국제노동기구(ILO)에서 3대 위험사업으로 분류됨.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구 분	개정이유
여성농어업인의 안전 확보 지원사업 시행 근거 마련	국가 및 지자체가 여성농어업인의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 근로환경이 개선 지원, 농어촌지역 내 여성에 대한 성범죄의 예방, 안전한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의무 규정 신설

자료 : 서삼석의원 개정 법안

5. 여성농업인 정책 방향

지금까지 농촌 여성은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주로서의 지위나 대우를 받지 못했다. 가부장적인 농업구조 아래 보조자 또는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했고 가사노동과 아이 돌봄의 역할까지 이중적인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여성농업인 정책은 가정 속에서 여성농업인이 아니라 주체적인 농업경영주로서 역할과 지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과 여성농업인의 직업적·사회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농업인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개발과 사회적 경제 참여를 확대하고 창업지원과 맞춤형 교육을 통한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일과 가정과 육아를 함께 부담해야 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보육시설 지원을 확대하여 아이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작업환경을 고려한 여성농업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농촌 여성은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의 미래 세대를 유지하는 주역이다. 귀농귀촌·다문화가정 등 농촌 거주 여성을 적극 지원을 함으로써 여성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 아울러 청년여성농업인 영농 정착을 위한 멘토제 운영, 귀농·귀촌 희망여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6. 향후 과제

먼저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 제고는 농촌공동체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여성이 없는 농업과 농촌사회는 경쟁력을 잃고 붕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업과 농촌사회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권익과 지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사회를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일터·쉼터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보호해야만 건강한 농촌가정을 구현하고 농업·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정 토론

3차 전북·전남·경남 지역

김명순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정책위원장)

옥은숙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이현서 (전라북도청 농업정책과 과장)

여성농업인 지위에 관한 토론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김명순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남편의 동의 없이 공동경영주로 등록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당히 큰 발걸음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허나 농업 관련 법률상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자격은 ‘경영주 외 농업인’에 불과하다.

공동경영주 용어를 사용하지만 농업관련 법률에선 별다른 의미가 없다. 즉 경영주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공동경영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농업인 지위를 규정하고,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률 규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

이는 여성농업인이 직업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에서부터 시작 할 수 있을 것 같다. 애초에 여성농업인은 결혼을 하면서 남편 쪽으로 편입되어 그저 보조자로서의 역할만 인정받았다.

우리가 말하는 여성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법적 지위를 말하기보다 명칭 그대로 여성농업인은 농업인 기준에 ‘여성’이라는 단어를 포함 시켜 여성농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 생각에선 모든 정책에 있어 여성농업인 역시 정책대상자이자 수혜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부분 보조자라는 인식 때문에 정책대상자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 최소한의 직업적 지위를 확보하여 정책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영체로 등록을 못하게 되는 경우, 공동경영주 제도를 활용하여 등록하는 것도 필요 하다. 또한 농업경영체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여 보조자가 아닌 동일선상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사회보장제도속으로 들어가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농업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감면 또는 지원 혜택을 고민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부분이 직업적 지위를 확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한 가지 더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개정하여 공동경영주가 아닌 농업공동경영체라 명하여 최소 부부까지는 경영체로 인정해주는 방법도 고민해봤으면 한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선 많은 것들을 논의하고 공동경영주의 맹점 등을 보완해야 하겠지만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를 위한 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여성농민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해 농어업경영체법 전면 개정해야 한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정책위원장 오순이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의 가장 큰 피해자는 농민이다. 올 농번기철에는 심각한 인력난까지 겹쳐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했고, 인력부족은 여성농민들의 농업노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민이 시급히 해결하기 원한 과제로 ‘과도한 노동시간 경감’을 뽑았다. 여성농민들은 가사노동, 돌봄노동, 농업노동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가사노동또한 농업노동과 구별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다. 6차산업의 발전과 농가공의 증가, 로컬푸드매장의 증가등으로 여성농민들의 노동영역의 범위는 더 넓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농민들의 지위는 달라진 것이 없다.

여성농민도 경영주와 똑같은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라는 여성농민들의 투쟁 끝에 ‘공동경영주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별지 1호 서식> 한권의 란에 기재됐을 뿐 실질적인 권리를 규정하는 법적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공동경영주 등록률이 등록대상중 7%도 안된다는 사실은 공동경영주가 되어도 달라진 것이 없기에 여성농민들의 등록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경영주는 겸업이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도 등록이 가능한데, 공동경영주에 대해서는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농민수당의 실시과정에서 여성농민의 농민으로서 지위가 매우 취약함이 드러났고, 현재의 농가단위의 농업정책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계기가 되었다.

특히, 현재의 농업경영체 제도가 술한 농민들을 차별하고 배제시키고 있음을 알게되었다. 30년을 농촌마을에서 농사지으며 살면서 마을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농민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서 삭제되었다. 그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만 현재의 경영체법 상에선 농업인이 아니다.

25년을 농촌에 살면서 주중에는 여성농업인센터장으로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일하고, 퇴근후나 주말에는 논으로 밭으로 달려가야 하는 여성농민도 농업인이 아니다.

농촌에는 농사일을 하면서 요양보호사, 학교급식조리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솔한 여성농민들이 있다. 하지만, 의료보험이 직장가입자라는 이유로 경영체등록에서 강제 삭제되었다.

그로인해 농민수당에서도 행복바우처 제도에서도 제외대상이 되어버렸다. 10년째 제자리인 농업소득으로 농가살림을 유지할수 없어 여성농민들이 겸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들은 농민으로서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다.

농업인의 정의에 90일이상 종사, 120만원 농산물판매라는 조항은 행정에선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다. 최근 농협에서 복수조합원으로 등록되었던 여성농민들이 판매나 구매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정리대상이 된적이 있다. 아직까지 많은 여성농민들이 남편명의로만 거래할 뿐 본인명의로 거래를 해본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농지또한 남편명의로 되어있을뿐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의 대상에서는 농지가 없다는 이유로 정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000년 전여농에서 1300명의 여성농민들에게 성평등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여성농민으로서 지위를 보장받기위해 개별단위의 농민등록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92.2%로 나왔다. 정부정책이나 농협이용과정에서 솔하게 차별받아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현재의 농어업경영체법은 개방농정하에 기업농육성 차원에서 농업경영인이라는 의미의 '농업인'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지금은 농업인의 범위를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법인에 1년이상 종사하는 종사자까지 확대해왔다. 하지만, 정작 농사를 지으면서 겸업을 하는 여성농민들은 농업인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300평이하 소규모 농사를 짓는 청년농이나,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은퇴농은 농업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그래서 전여농에서는 새로운 농민에 대한 규정과 농민등록제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발제하신 내용중에 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에 대한 법적근거와 '공동경영주' 종사상 지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별하자는 의견에 동의한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가 개인을 기준으로 했듯이 '경영체'단위로 작성하되 농업인 개인에 개별정보를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고 느낀다. 한 경영체 내에 경영주, 공동경영주(복수가능), 단순가족종사자, 유급종사자등을 선택할수 있게 하지만 개별의 등록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자는 방안과 새로운 개별 농민등록제를 주장하는 방안을 농특위 여성정책포럼에서 논의한바가 있다.

경영체 등록은 농가단위로 하더라도, 세부 정책사업별로 그에 해당되는 사업대상자를 따로 정리하자는 의견도 있다. 농민수당처럼 개별에게 지급되어야 할 사업과 농가단위로 지급되어야 할 사업의 대상자를 달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현재, 농촌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여전해 청년여성농업인들이 처한 현실또한 성차별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승계농의 경우 부모가 아들에게는 쉽게 농지도 물려주고, 경영체 독립을 하게끔 도와주지만, 청년여성들에게는 잠시 일손을 돕는 보조자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공동경영주 등록대상을 경영주의 배우자로 한정하는 문제와 행복바우처 대상을 농가당 1인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바꾸자는데 동의한다.

공동경영주의 실질적 권한을 명시하는 것은 여성농업인육성법에 명시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안은 모든 농업정책이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수립되도록 의무화하고(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등), 일-생활 균형의 방안을 명시하여 휴가와 기본권을 정확히 보장받을수 있게 하고, 여성농민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법안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한다.

농가중심의 농업정책을 지양하고, 성평등한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미래 인력육성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이다. 최소한 공동경영주 제도라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정립되어서 여성농민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주제를 쉽게 정리해주신 두분 발제자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정책지원 방안

전북도청 농업정책과 과장 이현서

□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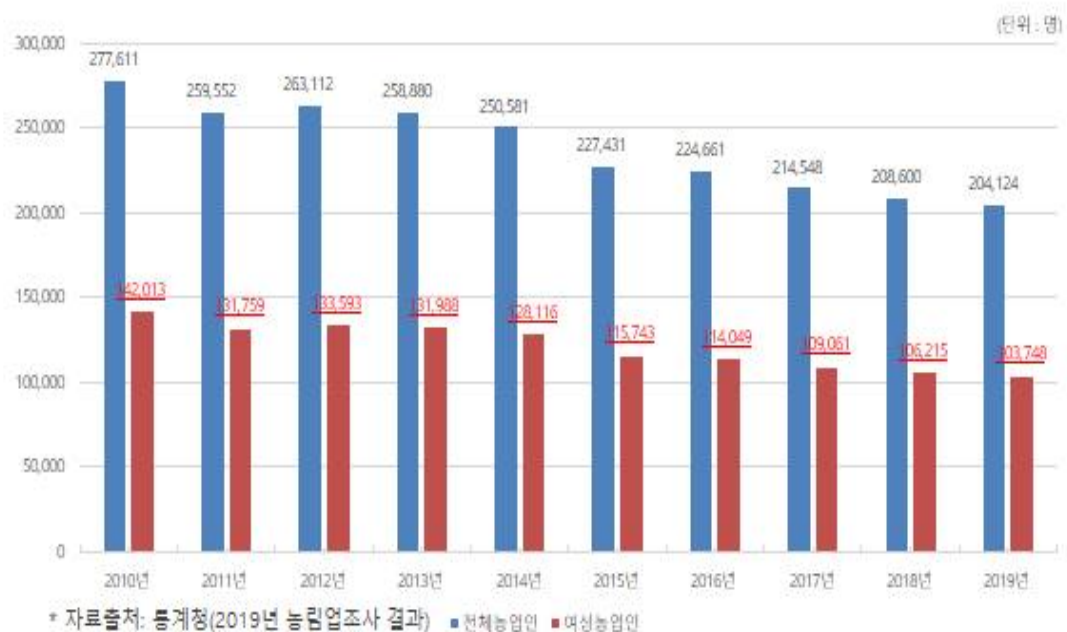
- 최근 코로나19, 기후변화, 농촌 과소화 등 농업·농촌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농업·농촌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농촌을 지탱하는 주축인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 전라북도 여성 농가 인구는 104천명으로 전북 농가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농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6차 산업과 로컬푸드에서도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 그런데 농식품부가 발표한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61.6%가 농업인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단순히 가족종사자로 생각하고 있으며, 경영주로 생각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25.4%로 나타나, 농촌의 주역인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위향상 및 권익 증진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와 여성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점차적으로 사업량을 확대하여 올해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34천명, 농번기 공동급식 580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다.
- 여성농업인단체에서도 체감형 복지시책으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을 보면, 이들 사업이 삼락농정의 핵심사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 또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장비는 다용도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이동식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로 여성농업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이 외에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이 농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변화하는 농촌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살맛 나는 농촌! 보람찬 여성농업인!”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는 전라북도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1. 전라북도 농촌 및 여성농업인 현황

□ (농가인구)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공동체 지속가능 위기 증가

- 전북 여성농가인구는 2010년 142천명, 2015년 115.7천명, 2019년 103.7천명으로 지속 감소



- 지난 10년간 **농촌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40세미만 농촌여성 비중이 24.9%에서 14.1%로 감소한 반면, 70세 이상은 23%에서 34.2%로 증가하여 **농촌의 여성고령화가 심각**

* 농가인구 평균연령 : ('15) 65.6세 →('16) 66.3 →('17) 67.0 →('19) 68.2

** 농어촌 65세이상 비율 : ('10) 33.0% → ('16) 42.3% → ('19) 48.0%

-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생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적정 농가 유지 관점에서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의 위험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음.

- (농가호수) 전국대비 전라북도 농가 점유율은 9.4%를 유지하고 있으며 '14년 이후 농가수는 정체를 보이고 있음
- (농가인구) '19년 기준 204,124명으로 전년 대비 4,476명 감소
- (고령화) 40세미만 경영주 농가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65세이상 경영주 농가 비율은 증가

< 표1-1 > 전라북도 농가수 및 인구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농가호수 (호)	전 국	1,120,776	1,088,518	1,068,274	1,042,017	1,020,838	1,007,158
	전 북 (점유율)	104,036 (9.3%)	100,362 (9.2%)	98,930 (9.3%)	96,780 (9.2%)	94,935 (9.2%)	94,735 (9.4%)
농가인구 (명)	전 국	2,751,792	2,569,387	2,496,406	2,422,256	2,314,982	2,244,783
	전 북 (점유율)	250,581 (9.1%)	227,431 (8.9%)	224,661 (9.0%)	214,548 (8.8%)	208,600 (9.0%)	204,124 (9.1%)

< 표1-2 > 전라북도 농가의 고령화율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고령화율	전 체	104,036	100,362	98,930	96,780	94,935	94,735
	40세미만 농 가	1,071 (1.0%)	1,567 (1.6%)	1,354 (1.4%)	1,169 (1.2%)	996 (1.0%)	871 (1.0%)
	65세이상 농 가	59,632 (57.1%)	55,915 (55.7%)	56,952 (57.6%)	57,663 (59.6%)	58,539 (61.6%)	59,230 (62.5%)

*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계층 다변화) 농촌 구성원의 다양성 확대 및 농가별 소득격차 심화

- 귀농귀촌·결혼이민 등 농촌사회의 유입동기가 다양한 집단의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농촌사회내 선주민 여성과의 농촌생활 가치관 이질성 증가

* '19년 귀농(전북) : 1,315호 1,853명, 귀촌 13,477호, 17,292명

* 결혼이민자 : ('15) 9,303명 → ('16) 10,568 → ('17) 10,900 → ('18) 11,165 → ('19) 11,595

- 농가별 계층의 다양성 증가로 농업소득 격차 확대

II. 전북 여성농업인 주요정책 추진현황

□ 전라북도 여성농업인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21. 3월)

【 개요 】

- 조 례 명 :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
- 개정일자 : 제379회 임시회('21. 3월)

○ 개정사유

- ①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 할 때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②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서 이주 여성농어업인 위주의 정착지원 사업을 귀농 여성농어업인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필요

○ 주요내용

- ① “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조의5 신설)
- ②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할 경우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7조② 신설)
- ③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아동

및 노인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② 신설)

④ 도내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⑤ 도지사는 여성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마다 10월 15일*을 전라북도 여성농업인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안 제16조 신설)

* 10월 15일 :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복지지원사업 추진

【추진현황】

- ◇ 의료·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복지기회 제공
- ◇ 여성농업인 영농·가사 등 부담 경감을 통한 삶의 질 여건 개선
- ◇ 보육 사각지대 해소, 보육여건 개선을 통한 농촌 정주여건 개선

○ 2021년도 추진사업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계	국비	용자	도비	시군비	자담	
계	9개사업	18,848	5,128		2,555	10,132	1,033	
여성농업인생생카드 지원	34천명	5,111			1,329	3,101	681	건강관리, 문화, 학습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원(15만원/인)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580마을	1,856			557	1,299		공동급식에 필요한 인건비, 부식비 지원(3,200천원/마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82명	401			100	261	40	출산여성 농업인 가사·영농도우미 지원(70천원/일, 최대 70일)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1,600명	1,120	<784>		50	118	168	질병·사고 농업인 영농도우미 지원(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0일이내)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지원	7개소	882			220	618	44	여성농업인센터운영비 지원(보육, 방과후 학습, 고충상담, 문화활동)

								지원 등)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00여명	320			80	240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이동식 놀이교실	3개소	502	266		99	137		읍·면 순회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 운영(3개소)
여성농업인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1,000대	500			120	280	100	여성용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500천원 한도 / 인)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2,330개소	8,156	4,078			4,078		농촌지역 마을에 건강관리 의료 보조기구 지원(3,500천원/개소)

III.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방향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성별격차 해소가 중요한 의제로 대두되며 포
용성장의 핵심과제로 전북농촌 성평등 정책 확대
 - 성평등 실현을 위한 비전 및 추진내용 명확화
 - 성인지적 농업·농촌정책의 추진체계 강화
 - * 정책 내실화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강화(조례, 전담인력 등)와 여성농업인 단체
및 정책패널의 협업을 통한 소통강화
 - 성평등 인식 확대를 위한 농업농촌 각 분야 성평등 교육 확대
 - * 성평등 인식 확대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농민교육 실시
- 농업·농촌 정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농업분야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통한 농촌
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농촌공동체 복원
 - *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 등 농업분야 일자리 확대 등에 연계한 여성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한 공동체 활동 강화
 - 농촌 여성 역할증대에 따른 인적자원 육성 및 사회적 지위 확대
 - * 비대면 강화 4차 산업혁명 진행 등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들의 역할 증대 및
영상, 온라인 등 정보기술 등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 육성

○ 청년 여성농업인을 위한 보육여건 개선, 노동부담 경감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의 직업적 복지 강화 및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정책 지원

○ 청년, 고령,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여성의 세대공감형 지역사회 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통합**

* 삶의 가치 변화에 따른 청년 여성농업인·귀농귀촌 여성유입, 독거노인 증가, 결혼 이민여성의 정착 등 농촌지역 여성구성원의 다양화로 인한 사회갈등 요인 존재 공존

IV. 건의사항

①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의 최일선인 시·군에서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 제도와 추진 필요**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시군구포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또는 시·도(**시군구포함**)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시·도(**시군구포함**)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업인센터 국가지원사업으로 환원(제도 및 국비 지원 확립)**

- 여성농업인센터는 정부가 직접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14년)하여 지자체 자체추진의 여건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 및 예산지원이 상이하여 안정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 전북('21년 7개소 운영중)

-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 지원 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여성 농어업인 관련 시설**'을 '**여성농어업인센터**'로 명시하여 국가적으로 지원 필요.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여성농업인센터)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8.>

여성농어업인 정책과 지원 및 조례 개정을 통한 활성화 방안

경남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옥은숙

“일반적인 여성 농어업인들이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정책이나 시행되고 있는 제도나 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1.여성농업인 제도와 지원 사업에 대한 2018년도 실태조사 자료에 의한 인지도를 살펴보자면,

농번기 마을공동 밥상 지원 사업	39.4%
마을기업 및 농촌체험마을 지원 사업	33.4%
여성 농업인 대회	33.1%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	32.5%
국제결혼 여성 이민자 지원 사업	28.5%
여성 농업인센터	26.2%
영농 후계자 여성우대 제도	26.1%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	23.5%
고령 농가 가사 도우미 지원 제도	23.2%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제도	16.3%
농업경영주 등록 제도	14.1%
농촌 소규모보육시설 지원 제도	12.6%
농기계 임대 및 교육 제도	12.0%
농협 복수조합원 제도	11.9%
사고 농가 영농 도우미 지원	10.8%
인지하는 제도 없음	18.0%

여성농업인 정책의 인지도와 이용도는 위의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이용이나 참여 비율은 4.9%로 낮아서 이용이 쉽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정책으로 수행되는 제도나 시설 중 어느 하나도 알지 못하는 비

율은 18.0%나 되었다.

전체 인지도가 39.4%로 가장 높은 ‘마을 공동 밥상’은 참여율도 23.7%로 가장 높게 조사 되었다. 이러한 제도나 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영농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농업인의 정책 참여도는 인지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농번기 ‘마을 공동 밥상’을 제외하면 참여율은 0.7%~12.6%에 불과하여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2.여성농업인의 제도와 지원에 대한 이용 및 참여도 상위 7개 사업을 살펴보면,

농번기 마을 공동 밥상 지원 사업	23.7%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	12.6%
마을기업 및 농촌체험마을 지원 사업	10.0%
여성농업인 대회	9.1%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	5.6%
여성농업인센터	4.9%
고령농가 가사도우미 지원 제도	4.8%

전체 내용 중 아주 특이한 사항은 ‘여성농업인 대회’는 평균은 9.1%이었으나 영농규모별 조사에 의하면 소규모 여성농업인은 참여도가 6.8%인 반면에 대규모 여성농업인은 43.4%로 참여도가 가장 높았다.

3. 그렇다면 귀농 여성농업인의 제도나 시설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	42.7%
마을기업 및 농촌체험마을 지원 사업	38.2%
영농 후계자 여성우대 제도	37.1%
여성농업인 센터	36.7%
여성농업인 대회	36.0%
귀농 여성농업인 정착지원 교육 제도	35.6%
농번기 마을 공동 밥상	33.3%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지원 사업	31.8%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31.1%
귀농 여성 멘토링제도	28.5%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주 등록 제도	24.3%

고령 취약 농가 가사도우미 지원 제도	22.1%
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지원 제도	22.1%
출산여성을 위한 농가도우미 제도	21.3%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 지원	19.5%

귀농 여성농업인이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나 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위의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귀농기간은 3년이상으로 조사가 되었고 연령별로 보자면 40대, 50대, 30대 후반 귀농 여성농업인들이 정책이나 제도, 시설에 대한 인지 정도는 40%~50%나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관심과 인지도는 귀농을 한 여성농업인들이 대체적으로 높은 수치로 조사가 되었다.

4. 귀농 여성농업인의 제도, 시설에 대한 이용과 참여도를 살펴보자면,

귀농 여성농업인 정착지원 교육 제도	21.8%
귀농 여성 멘토링 제도	18.7%
농번기 마을 공동 밥상 지원 사업	16.9%
마을기업 및 농촌체험마을 지원 사업	13.8%
여성농업인 대회	12.4%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	11.6%
여성농업인 센터	11.1%

귀농 여성농업인의 실제 이용과 참여도는 위의 조사와 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귀농 후 정착과 관련된 교육에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특이한 점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의 경우 30대~50대의 참여도는 10%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70대에서는 40%의 높은 참여도로 조사되었다.

5. 여성농업인의 인식과 상황 종합 분석

위와 같이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인지도가 낮고 참여를 한다거나 지원을 받는 비율도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여성농업인은 농업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농업 소득 외에 70% 정도를 다른 노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통적으로 농사일이 어렵고 농사와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것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활동에도 참여하는 노동 부담도 무시할 수 없으며 반면에 상대적으로 문화 활동과 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시간은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른 농어촌의 여성을 이해하고 집단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농업인이라는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여성농업인은 직업인이라기보다 여전히 가족의 일원으로 보고 있고 공동경영주로 등록을 하고는 있으나 공동경영주인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생산과 유통 지원 중심의 제도 마련 방향에도 그동안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측면에서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관련법에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지위 보장과 권익 향상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도, 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실제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에 근거한 여성농어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함으로써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 여성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종합복지시책을 강구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질병과 소외된 복지, 문화분야에서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제도권에 있는 시군,도의회 의원들은 행정에서 여성농어업인들을 위한 제도 개선, 지원 사업 등이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여성농어업인 스스로도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장과 삶의 질 향상, 당당한 직업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참고자료 1>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09.08.13>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가족공동경영협약”이란 평등한 농어업경영참여 및 합리적인 경영의사 결정을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족이 자유롭게 합의한 협약을 말한다. <신설 2020.2.6.>

제3조(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 실현 등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 지역사회와의 참여 유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2.6.>

③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

제4조(적극적 조치)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5조(지원범위)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도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 자체 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체계)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05.09.>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7조의2(가족공동경영협약 등 <본조신설 2020.2.6.>)① 도지사는 가족공동경영협약에 관한 계획을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가족 공동경영 협약은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문서화할 수 있다.

③ 가족 공동경영 협약서에는 협약의 목적, 경영계획 수립·평가, 경영의 역할분담(가사분담을 포함한다), 이익분배, 노동조건, 장래의 경영 이양 등 다양한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제8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회의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경영 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여성 창업 농어업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
5.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 지원
6.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영어작업의 환경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도지사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출산농어가도우미제도 지원의 현실화 및 여성농어업인의 질병으로 인한 영농·영어 차질 시 농어가도우미지원 확대 강화 <개정 2014.10.10, 2015.10.29.>

2. 사고발생농어가 및 고령취약농어가 등에게 간병, 교육도우미 등 인력 지원 확대
3.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립보육시설 확충
4.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5.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령 여성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적극 지원
6. 여성농어업인 소규모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여성농어업인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강화)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체계 구축 및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제도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한다.

1. 기본계획 점검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2.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
3. 여성농어업인 관련 통계 생산, 활용 유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고충상담,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권익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4조(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도지사는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 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귀농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메모>

정책간담회 자료집

여성농어업인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2021년 9월 3일 인쇄

발행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사) 한국농촌사회학회

인쇄처 (유)아트기획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